

碩士學位論文

중국의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郭明秀

2008年 2月

중국의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宋錫彦

郭明秀

이 論文을 法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2月

郭明秀의 法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인)

委 員 _____ (인)

委 員 _____ (인)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8年 2月

**Study on Independent Director Legal
System of China**

Ming-Xiu Guo

(Supervised by professor Seok-Eon So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law**

2008.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目 次

<Abstract>

제1장 序 論	1
제1절 研究目的	1
제2절 研究方法과 研究範圍	2
1. 研究方法	2
2. 研究범위	3
제2장 中國의 企業支配構造改善 過程	4
제1절 初期 國有企業의 支配構造改善	4
1. 방권양리(放權讓利)	4
2. 이개세(利改稅)	5
3. 양권분리(兩權分離)	5
제2절 株式制度의 導入	7
1. 국유기업의 현대기업화 추진	7
2. 증권시장의 출현	8
제3절 會社法制定과 株式會社로의 組織轉換	8
1. 中國의 기업관련법규 제정경과	8
2. 1993년 회사법상 주식회사의 기관구성	13
제3장 中國의 社外理事制度	15
제1절 中國 企業支配構造의 問題	15
1. 일고독대(一股獨大)현상의 출현	15
2. 이사회 독립성 결여	16
3. 감사회의 형해화	17
제2절 現行法上 社外理事制度	17
1. 2005년 회사법 개정의 배경	17
2.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주요 내용	20
3. 中國의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제규정	28
4. 현행제도의 장단점	35
제3절 中國 社外理事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36
1. 사외이사 인원수	39

2. 사외이사 자격요건	40
3. 사외이사 직무수행여건	42
4. 사외이사의 추천방법	45
5. 사외이사의 책임	48
6. 사외이사와 감사회의 관계	50
7. 사외이사제도의 법적 체계문제	51
제4장 韓國의 社外理事制度	53
제1절 導入背景	53
제2절 導入過程	53
제3절 主要內容	55
제5장 結 論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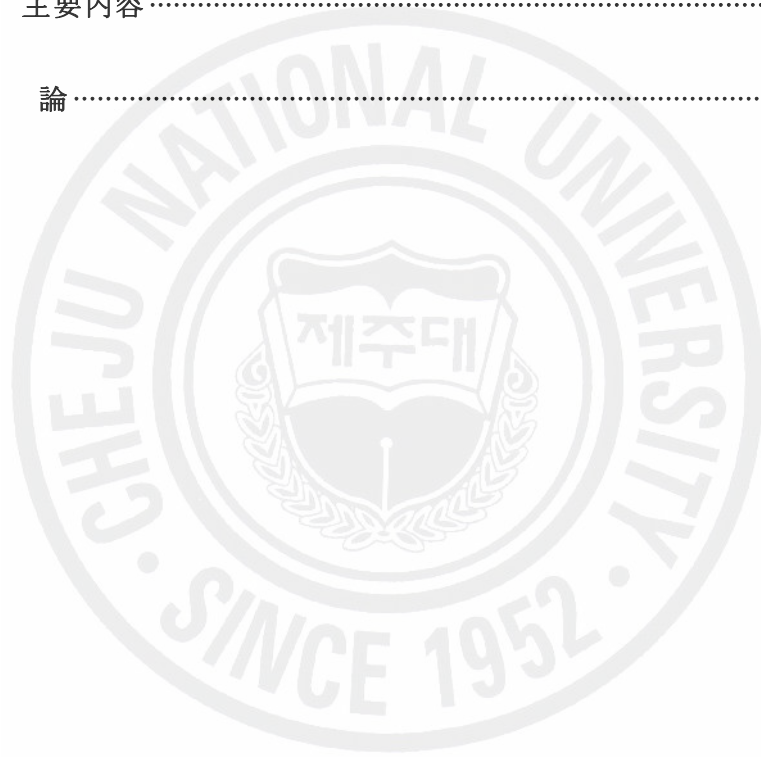


表 次 例

표 3-1	사외이사 인원수	39
표 3-2	연령별	41
표 3-3	학력	41
표 3-4	사외이사 출신	41
표 3-5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약하는 원인	43
표 3-6	사외이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원인	44
표 3-7	사외이사가 능력을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는 조건	44



<Abstract>

Study on Independent Director Legal System of China

Ming-Xiu, Guo

Advisor: Prof. Seok-Eon Song, Ph.D.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The Independent director System is an important element of legal and policy reform in the field of corporate governance. It started in America and was accepted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fter IMF Crisi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made a bilateral agreement at the end of 1997. The government made the Guidelines for The Independent director System in 1999.

In August 2001, the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CSRC) issued its Guidance Opin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Independent Director System in Listed Companies. In 2005, when Corporate Law of China was issued The Independent Director System became the legislative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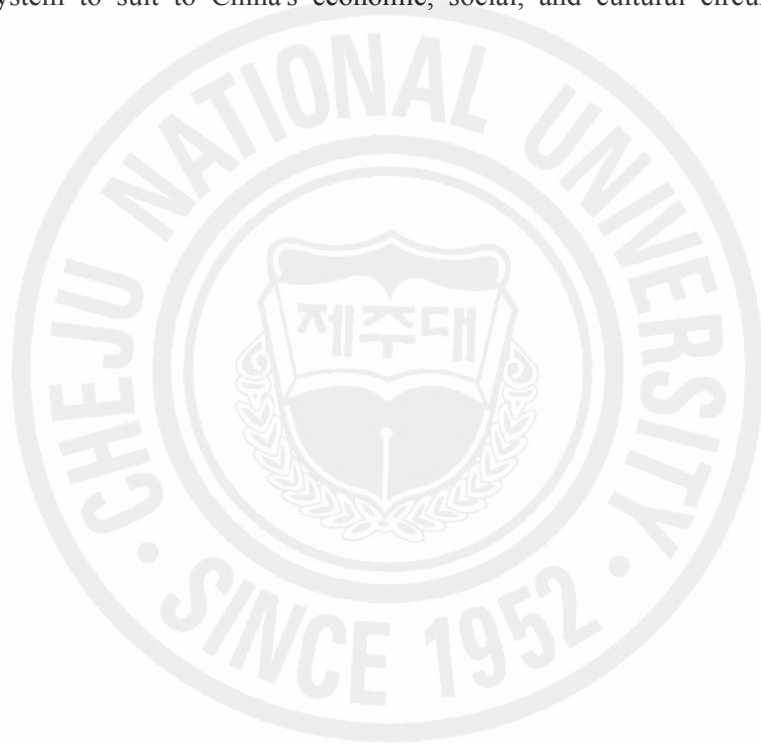
In this article, I will introduce the background, rules about Independent director in China, and the previews before The Independent director system China Government has established many regulations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By look into Independent director's situations(number, academic background, main job) and results, we can find out that the main problem of Independent director is, they did not exercise their supervisory or monitoring role due to dominant shareholder or chief executive officer's influence on the selection and

oper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 Compared to Korea, we can find that there are many similar problems in both countries. Also we can take some suggestions about how to improve China's The Independent Director Legal System.

I think The Independent Director Legal System is effective but is not the only way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We need harmonize with other systems such as stock market, shareholder suits and the compensation program.

The Independent Director Legal System started in America, however each country's circumstances are different. We should make The Independent Director Legal System to suit to China'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ircumstances.



제1장 序 論

제1절 研究目的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한 나라의 기업지배구조는 그 나라의 금융시장과 경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그 효과가 파급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활동영역이 국경을 초월한 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이다. 특히 주식회사에서 그러하다. 이는 향후 주식회사 주주의 구성이 다국적화 되기도 하거니와 기업의 자금조달의 세계화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가정이 받아들여진다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와 관심도 세계적인 논의와 관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미국에서 출발하여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모든 나라의 관심사가 되었다. 세계은행 행장인 James D. Wolfenson은 좋은 기업지배구조는 국가의 좋은 통치기구만큼 중요하다¹⁾고 말할 정도로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좋은 기업지배구조, 즉 기존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위에 터 잡은 삼권분립과 같이 기업 특히 주식회사의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적절한 권한과 기능의 분배가 개선책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주주총회, 감사(회), 이사회, 회계제도, 지배주주, 기관투자 등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각도 다양하여 법학, 경영학, 회계학, 재정학, 정책학, 경제학, 사회학적 접근 등의 복잡한 거미줄 같은 전개가 펼쳐지고 있다.

자본주의 제도인 기업제도는 중국에 아직까지는 생소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중국에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본주의 국가의 그것과는 다른 점이 있는 게 현실이다. 중국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취지에서 나름대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자본주의적 구조로의 시도

1) 上海證券交易所研究中心, 「中國上市公司治理報告」(2004), 第8章, 2면.

는 1979년에 행하였다. 즉 방권양리(放權讓利), 이개세(利改稅), 양권분리(兩權分離) 및 주식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증권시장을 개선하고 국유 기업개혁을 가속하여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현대기업제도의 실현을 위해 많은 법규 및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기업개혁과 법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게다가 중국의 WTO의 가입과 글로벌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지배구조개선이 주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논의에 대한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2005년 신회사법에 도입한 사외이사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사외이사제도는 회사제도가 비교적 오래된 국가에서 근래에 도입한 영미제도이다. 사외이사제도가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유도하는 제도인가에 대하여는 아직도 논란이 많은데 이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 제도인 기업제도가 중국의 기업에 그대로 응용될 수 있는 것인지는 아직도 의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의문을 배경으로 하여 중국의 사외이사제도를 분석하고 제외국의 경험을 중국에 비취 바람직한 중국의 사외이사제도를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절 研究方法과 研究範圍

1.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첫째, 국내외에서 발표된 관련 저서, 논문 및 자료들을 수집·정리·분석하여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문헌 분석적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기존 문헌은 각종 학회잡지들과 각 기관의 보고서 그리고 단행본 등을 망라하여 참고하였고 특히 조사 자료는 직접 조사하고 수행하여 작성하여야 타당하지만 작업의 곤란성과 방대성으로 인하여 기존 조사 자료를 재 입수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둘째, 비교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규정 및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법해석학에 기초하여 기존의 법률 및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외이사에 관한 법적 규정을 분석하고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먼저 중국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사외이사제도의 도입과정을 살펴보고 왜 도입하였는지, 도입은 중국의 기업지배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영향은 선진 기업제도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향후 중국에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제도인지 등을 검토한다. 그 후 검토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범위로 삼는다. 이하 본 논문의 서술 형식의 큰 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연구방법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초기에 중국 회사지배구조 개선의 실시했던 방권양리, 이개세, 양권분리 및 주식제 등 제도의 실시배경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중국에서의 사외이사제도의 개념을 살펴보고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법규정 및 실시현황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하여 중국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제4장에서 한국사외이사제도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다. 즉 한국에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 배경과 실시 경과 및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관련법규를 살펴본다.

제5장은 결론으로서 중국의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중국의 사외이사제도의 방향을 제시한다.

제2장 中國의 企業支配構造改善과 過程

제1절 初期 國有企業의 支配構造改善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의 중국의 기업은 사기업이 아닌 국유기업이 일반적이었다.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진행된 국유기업에 대한 조정과 개혁은 기본적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국유기업 통제권을 둘러싼 권한이양이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기업에 대한 소유와 통제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부속기관이라는 본질적 특성에는 변화가 없었다.

국유기업의 지배구조개혁은 1979년 중국 국무원의 5개 규정²⁾에서 시작되었다.³⁾ 중국경제체제의 변동을 반영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주로 방권양리(放權讓利), 이개세(利改稅) 및 양권분리(兩權分離) 및 주식제도 등으로 이루어졌다.

1. 방권양리(放權讓利)

1979년부터 1983년까지 실시된 방권양리는 기업의 경영의 자주권을 확대하고 종래 전액 국고로 상납케 하던 이윤의 일부를 기업 내에 유보시켜 기업의 확대 재생산 및 종업원의 복리와 상여금 지급에 사용토록 하여 기업의 생산 활동을 활성화시키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방권양리제도의 시행은 기대했던 바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이윤유보 비율이 낮고 불안정하여 인센티브로서 기능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초기의 이윤유보계획은 연성적인 형태로 협상이 가능한 것이었다. 정부와 기업 간에는 이윤유보율을 결정하기 위한 끊임없는 협상으로 기업내 이윤유보는 확보되

2) ①국영공업기업경영관리 자주권 확대에 관한 약간의 규정② 국영기업 이윤확보실행에 관한 잠정규정③국영공업기업의 고정자산세 징수에 관한 잠정규정④국영공업기업의 고정자산감가상각율르 높이는 것에 관한 잠정규정⑤국영공업기업에서유동자금의 전액대부 실행에 관한 잠정규정.

3) 劉大洪·李華振, "經濟法視野里國企治理模式,'兩權分离失灵'的探源与反思," <http://www.xslx.com/htm/mzfx/fxtt/2004-12-09-17892.htm>

었지만 제도의 진정한 취지인 기업의 생산활동 활성화를 위한 동기유발 기능에는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2. 이개세(利改稅)

1984년 9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2기 3중전회에서 공업부문 경제체제 개혁을 위하여 이윤상납제를 납세제로 바꾸는 소위 이개세를 실시하였다. 즉 기업이 이익에 대한 국가의 회수를 세금으로 전환하여 국가와 기업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었다.

이개세를 채택한 기본적인 목적은 통일적인 조세체계를 확립하여 기업이 정부로부터 재무적으로 독립함으로써 정부의 자의적 통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있었다. 방권양리제도하의 이윤유보제는 개별기업과 주관부서 사이에 이윤유보율을 협상을 통하여 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의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이 있었다. 경영성과가 양호한 기업은 더욱 많은 이윤을 상납하게 되고, 적자 기업은 오히려 부실 경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책임경영이 미흡한 체제상의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개세제도를 시행한 것이었는데 상대가격체계가 불합리하여 기업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불완전한 시장 환경 하에서 단순히 이윤에 대해 일률적으로 통일적인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3. 양권분리(兩權分離)

전 단계에서 기업의 자주권확보를 위하여 실시했던 방권양리와 이개세의 실패에 이어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는 양권분리제도를 실시했다.⁴⁾ 그 중에서 경영정보제(承包制)는 가장 전형적인 양권분리제도이다.

중국 국무원은 1986년 12월 「기업개혁을 심화하여 기업의 활력을 증강시키는

4) 陳林, “從‘放權讓利’到‘兩權分離’”,
<http://china-week.com/html/00616.htm>

데 관한 몇 가지 규정」(關於深化改革,增強企業活力的若干規定)을 통하여 다양한 형식의 경영청부제를 실시할 것을 발표하였다.

경영청부제는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실시하였다. 경영청부제는 기업이 기업의 소유자로서 국가와 일정기간동안 상호간의 책임, 권리 및 이익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의거하여 해당기업의 자산을 자주적으로 관리, 경영하는 권리를 부여받는 제도를 말한다. 즉 이 제도는 생산수단의 공유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시도하는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⁵⁾

경영청부제는 이전의 자주권 이양 위주의 방권양리식 개혁과 비교할 때 기업 경영 청부의 특성 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후자가 단순히 국가재정에 대한 기업의 상납의무를 집행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반면, 전자는 상대적으로 완비된 기업경영자주권을 부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경영청부제는 양보일괘(兩保一挂)⁶⁾라고 하는데 기업은 국가상납이윤과 기술개혁이라는 두 가지 임무를 책임지고, 임금총액을 개별 기업의 실현이익 총액과 연계하여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국가와 기업의 분배관계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1988년부터 국세와 지방세를 지방 세무당국이 일괄 징수하던 체제를 분리하여 징수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분류세를 실시하였다. 또한 세전부채 상환제를 이후에 부채상환 및 상납청부제로 바꾸었는데, 이는 기업경영성과에 대한 분배에 있어서 기업 채권자의 채권보다 정부의 조세권을 우선시 하는 것이었다. 경영청부제는 실시 후 2년 동안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즉 기업들은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이윤유보율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임금과 경영성과와의 연동이 분명해짐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국가와 기업간의 경영청부계약으로 과거의 자주권확대를 위한 개혁조치보다 기업의 경영자주권이 크게 신장되어 이윤창출과 이윤처분의 주체로서 지위가 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이윤의 투자권과 배분에 있어서도 기업의 입지가 강화되었다. 기업의 이윤확대와 적자규모의 축소로 정부재정도 보다 건전해졌기 때문이다.⁷⁾

5) 양원태, “중국국유기업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제13권 제3호(2000.5), 제5면.

6) 두 가지 부서의 경영책임과 한 가지 부서의 연계

7) 양원태, 상계논문, 제6면.

제2절 株式制度의 導入⁸⁾

1. 國有기업의 現代企業化 추진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성공을 위한 전제로 국유기업개혁의 방법으로 국유기업의 회사화작업을 추진하였다. 중국국유기업의 회사화란 국유기업을 회사형태로 전환시키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중국의 시장경제체제 도입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1993년 12월에 제정·공포한 중국회사법이 회사형태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만 인정하였으므로 국유기업의 회사화는 바로 국유기업을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⁹⁾

중국 국유기업의 회사화는 1984년 중국공산당 제12기 제3차 회의 이후 시작된 주식제기업의 시험에서 비롯되었다.¹⁰⁾ 이때의 주식제기업의 시험은 단지 기업자금조달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을 뿐, 기업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는 그 당시 상황으로는 기대할 수 없었다. 중국은 1992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4기 전당대회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수립을 중국경제체제개혁의 목표로 정하였고, 1993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4기 제3차 회의에서는 「중국 공산당 당 중앙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건설하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中國共產黨中央關於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的若干意見)을 의결하여 국유기업개혁의 목표로 현대적 기업제도의 수립을 선언하였다. 이로부터 본격적인 기업개혁이 시작된 것이다. 동 규정에서 선언한 현대기업제도의 정의는 대량생산에 부합되고 시장경제체제에 부응하는 권리와 책임을 부담하며, 기업이 독립된 법인실체로서 궁극적으로 국가의 주주권과 기업소유권의 분리(政企分離)하에 자주경영과 손익자기부담을 지는

8) 중국에서의 주식이란 용어는 股份이라고 한다.

9) 정용상, 「중국회사법론」,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3. 113면.

10) 주식제가 중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것은 국유기업이 아니라 향진기업(鄉鎮企業)이었다. 향진기업은 소유제가 아니고 기업의 조직형식도 아니다, 종합적 법적 개념인 것이다. 소유제 면에서 보면 향진기업은 향(鄉) 정부가 운영한 것, 촌(마을주민)이 운영한 것, 조합, 개인, 주식합작제, 주식제, 중외합자, 중외합작 등 다양 형식이 있으며, 산업분포면에서 보면 공업, 상업, 교통운송업, 건설업,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이 있다. 1984년부터 1986년까지 농촌에서 향진기업의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의 중대형 국유기업에 주식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출처: 鎮企業信息網編撰, <http://www.baibaofp.com/index-xzqyb.htm>

회사형태라고 천명¹¹⁾하고 국유기업 개혁목표를 현대기업제도 건설에 둔다고 명시하였다.

1997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15기 전당대회에서 중국은 국가소유의 다수의 대·중형 기업들을 주식회사형태로 전환할 것을 선포하였다. 중국은 비경쟁성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유기업을 회사형태로 전환시켜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기초를 다지고 있다. 중국의 국유기업의 회사화 목표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하여 기업을 시장주체로 육성함과 동시에 기업의 경영체질을 전반적으로 개선코자 함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국유기업의 회사화의 핵심문제는 기업지배구조의 개편에 있다.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를 수립할 수 있는가이다.¹²⁾

2. 증권시장의 출현

중국의 국유기업의 회사화는 오늘날 증권시장의 출현을 가져왔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의 증권시장이 처음인 건 아니다. 1949년 6월 천진증권거래소가 효시이다. 그러나 1956년 중국이 사회주의화되면서 증권시장이 폐지되었다. 그러다 1978년 개혁개방 후에 점차 회복되어 1981년 중국재정부에서 처음으로 국채를 발행하여 증권시장의 출현을 예고하였다. 마침내 1990년에 심천증권거래소, 1991년에 상해 증권거래소를 설치하여 오늘날 중국 기업 자금조달의 중요한 역할 뿐만 아니라 중국경제의 견인차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¹³⁾

제3절 會社法制定과 株式會社로의 組織轉換

1. 중국의 기업관련법규 제정경과

11) 중국공산당 제14기 3중 전회에서 발표한 「중국 공산당 당 중앙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건설하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中國共產黨中央關於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体制的若干意見).

정용상, 전게서, 115면 참조.

12) 정용상, 전게서, 116면.

13) 張春廷, 「証券市場導報」, 2001, 6. www.economy.guoxue.com/article.php/73

1) 기업입법개관

중국은 경제개혁을 위하여 국유기업의 개혁조치로 방권양리제도, 이개세제도, 양권분리제도 및 주식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특히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차 회의 이후 개혁개방정책을 통하여 꾸준한 경제성장을 거듭해 오면서 사회주의경제체제에 부응하는 입법활동을 본격화 하였다. 1992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4기 대표대회에서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후 중국 경제체제에 획기적인 개혁이 이루어 졌다. 이에 따라 기존 계획경제에 바탕을 둔 법률이나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였다. 기존의 소유제와 업종에 따른 분류법에 의해 입법하던 전통적 기업입법의 방식을 배척하고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출자방식과 책임부담형식에 따른 새로운 입법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업관련법의 새로운 구조체계를 정립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 1993년 12월 29일 제8기 전인대 상무위(全人代 常務委) 제5차 회의에서 회사법을 제정·공포하고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은 중국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법률체계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법률인데 이하에서 이 법이 제정·시행되기까지의 관련법규의 전신을 살펴본다.

(1) 외상(外商)투자기업 관련법규

외상투자기업의 입법은 회사법을 입법화하는 첫 발자국이었다. 1979년 이후 전국인민대표회의(全國人民代表大會)는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 「외자기업법」(「外資企業法」),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국무원은 중외합작경영기업법과 외자기업법의 실시세칙을 공포하였다. 이들 법규는 기업조직의 형식과 등록자본, 이사회 및 경영관리기구, 재무와 회계 그리고 해산과 청산 등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사영(私營)기업 관련법규

사영기업에 대한 법규는 국무원이 1988년 6월 25일에 공포한 「사영기업잠정조례」(「私營企業暫定條例」)가 있는데 여기에는 유한회사를 포함하는 3가지 종류의 사영기업 형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회사관리 법규

회사관리 법규는 1988년 6월에 공포된 「기업법인등기관리조례」(「企業法人登記管理條例」)가 있는데, 이에선 회사의 행위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4) 회사관련 지방법규(地方法規)

지방 법규는 일정 지역의 회사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범을 가리킨다. 예컨대, 1986년 9월 28일에 공포된 「광둥성섭외경제특구조례」(廣東省經濟特區涉外公司條例), 1992년 3월 18일에 공포된 「심천시주식회사담정조례」(深圳市股份有限公司暫行規定), 1992년 5월 18일의 「상해시주식회사잠정조례」(上海市股份有限公司暫行規定) 등이 있다. 위 조례들은 그 지역의 섭외회사(涉外會社)와 주식회사의 설립, 조직기구와 운영규칙에 대한 것이었다.

(5) 1993년 회사법

중국의 첫 번째 회사법은 1983년부터 초안 작성 준비를 시작하여 국내의 다양한 형식의 합자(合資), 합영(合營), 주식기업 형태의 발전에 따라 국가경제위원회(國家經濟委員會), 국가체제개혁위원회(國家體制改革委員會), 대외경제무역부(對外經濟貿易部)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의 법제위원회(法制委員會)로 회사법초안작성팀(“會社法草案作成小組”)을 구성하여 회사법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중국내의 분위기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갈등으로 자본주의적 주식회사제도의 도입에 적극적이지 못하여 국무원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그러다 1992년 덩소평(鄧小平) 국가주석의 “남순강화(南巡講話)” 후에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개혁을 중국경제체제개혁의 목표로 정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회사법의 제정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회사법초안은 1993년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3년 12월 29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이 통과되어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법은 기존의 국유기업법, 집단기업법, 섭외기업법 및 1997년의 조합기업법, 1999년의 개인독자기업법, 입법추진중인 주식합작기업법과 함께 새로운 기업법체계를 형성하여 중국의 각종 기업주체들을 규율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기본법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가 있다.

2) 중국회사입법과 주식회사제도 역사소고

중국 회사법의 입법연혁을 보면, 1903년 청나라 때 제정된 대청공사율(大清公司律)(총 131개조)이 중국 최초의 회사입법이다. 여기에는 회사의 종류를 합자회사, 합자유한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4종류로 정하였다.¹⁴⁾ 이후 1914년 공사조례(公司條例)를 제정하였고, 1929년 국민당이 공사법(公司法)을 제정하였다.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중국내에 존재하고 있었던 많은 사기업의 조직과 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한 조치로 1950년 사영기업잠정조례(私營企業暫定條例)와 1951년의 사영기업잠정조례실시방법(私營企業暫定條例實施方法)의 제정으로 사영기업의 조직형식을 무한공사, 유한공사, 양합공사(兩合公司), 주식회사와 주식양합공사로 규정하여 회사제도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틀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1956년 들어서 자본주의 상공업에 대한 사회주의 개조를 완성하면서 사실상 회사제도는 폐지되고, 1966년부터 10년간의 문화대혁명은 입법제도를 파괴하여 기업관련입법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78년 개혁개방정책이 채택되면서 공유제경제를 주축으로 하면서 집체(集體)¹⁵⁾, 사영(私營), 합자경영(合資經營) 등의 다양한 경제개체의 형태가 병존하

14) 張晉藩, 「清律研究」, 法律出版社, 1992. 205면. 정용상, 전계서, 36면. 재인용.

15) 집체기업(集體企業)은 사회주의국가의 산물로 일정 행정단위하에서의 전민소유제기업이다. 집체기업은 현대기업체제개혁이 요구에 따라 점차 조합기업, 주식합작기업,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됨에 따라 집체기업의 존재 필요성은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상실되고 말았다.

게 되었다.¹⁶⁾ 그래서 1980년대부터 회사제도가 외상기업(外商企業)에서 채용되었고, 1984년부터는 새로운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하의 주식회사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¹⁷⁾ 1987년 이후 주식회사의 설립이 본격화되었으며, 특히 1990년 12월의 상해증권교역시장(上海證券交易市場)과 심천증권교역시장(深圳證券交易市場)의 개설은 중국에서의 주식회사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 또한 1992년 5월 중국국가체제개혁위원회에서 제정·공포한 「주식제기업시행방법」 「주식회사규범의견」 「유한회사규범의견」에 근거하여 많은 회사들이 설립되었다. 이에 이어 동년 10월 제14차 전인대에서 시장경제체제수립의 개혁목표를 정하였고, 1993년 11월에는 전술한 국유기업의 회사화개혁을 선언하여¹⁸⁾ 12월에는 회사법을 제정·공포하기에 이르렀다. 1993년 회사법의 제정은 결국 중국 개혁개방정책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회사법은 총 11장 23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제1장에서는 총칙, 제2장 내지 제3장은 회사의 설립, 회사의 기관, 제4장은 주식발행 및 양도, 제5장 내지 제8장은 사채, 회계제도, 합병, 분할, 파산, 해산, 청산을, 제9장 외국회사의 지사, 제10장 벌칙, 제11장 부칙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법의 적용범위는 회사법에 의하여 중국내에서 설립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에만 적용된다. 외국인이 투자한 유한회사는 삼자기업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회사법을 적용한다.¹⁹⁾

16) 徐杰, 王建平, 「新編企業法公司法教程」, 中國政法大學出版社, 1997. 258면. 정용상, 전게서, 36면 재인용.

17) 1984년 11월의 상해비약음향회사(上海飛耀音響公司)가 대표적인 주식회사로서, 이 회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였다. 이 회사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래 최초의 주식회사라 할 수 있다. 정용상, 전게서, 37면.

18) 주식제 기업에 대한 실험을 國有企業試點이라고 한다. 1993년 14기 3中全會 후에 1994년 국무원은 100여 개의 대중형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현대기업제도를 실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 후에 각 省 市도 실험기업을 정하였다. 1996년에 전국에서 실험기업은 2343개사에 달하였다. 이 기업들 중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기업은 540개사 (23%), 주식회사로 변경한 기업은 540개사 23%에 차졌고, 국유독자(國有獨資)로 변하는 기업은 909개사이며 38.8%에 차졌다. 이들 기업에서 이사회를 설치한 회사가 71%, 감사회를 설치한 회사가 63%, 주주총회를 설치한 회사가 33%이다.

출처: http://www.stats.gov.cn/tjfx/ztfx/yj16da/t20021008_36817.htm

19) 중국에서는 소위 인적회사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중국의 기업개혁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고, 이러한 유형의 회사가 효율성이 감소하여 그 수가 줄어드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중국 회사법 제정에서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라 한다. 李飛, 「公司法的思考」, 「中國法律」, 1995.3. 22면. 물론 이러한 유형의 회사는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 예컨대 조합기업은 민법 또는 조합기업법이, 개인독자기업은 개인독자기업법이 적용된다. 개인독자기업은 비법인기업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한다.

2. 1993년 회사법상 주식회사의 기관구성

1) 종래의 중국 기업의 업무집행체제는 거의 대부분 공장장(工場長) 또는 지배인(經理)책임제 구조였다.²⁰⁾ 특히 국유기업에서는 공장장은 기업의 의사결정권, 업무집행권, 대표권을 갖는 기업의 최고책임자였다.²¹⁾ 그러나 이런 업무집행체제는 중국 국유기업의 현대기업화로의 개혁을 위한 회사법제정으로 주식회사의 기관을 고동대회(股東大會: 한국의 주주총회에 해당함. 이하 주주총회로 칭함), 동사회(董事會: 한국의 이사회에 해당함. 이하 이사회로 칭함), 감사회를 두어 이들 기관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여 상호 감시·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이사회는 이사(董事)들로 구성되며, 회사의 업무집행과 경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법규정과 주주총회의 수권에 따라 경영관리결정과 경리(經理)²²⁾ 등을 임명하며, 이사장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한다. 경리는 이사회에 대하여 고용관계에 의한 책임을 진다(제50조, 제119조). 감사회는 내부감독기관으로서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진인 이사, 이사장 및 경리를 감독하는 등 광범위한 감사권한을 갖지만 그 감사는 위법성감사에 국한된다.²³⁾

2)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으로 국유기업을 현대기업화 한다는 목표아래 자본주의 국가의 회사법에서와 같이 회사지배구조를 기관분화를 통한 효율적인 경영을 모색하려고 하였다. 즉 중국이 기업의 개혁개방을 위하여 전술한 공장장전권책임형태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기관분화를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했지만 국유기업의 회사화과정에서 정부지분에 의해 당간부 등이 소위 중국식 사외이사

20) 前 中華人民共和國 全民所有制 工業企業法 (제7조) 기업은 공장장(지배인)책임제를 실시하여 공장장은 법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21) 前 中華人民共和國 全民所有制 工業企業法 (제45조) 공장장은 회사의 법정 법인대표이다. 공장장은 기업의 생산경영관리업무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진다.

22) 중국법상 주식회사의 經理는 한국의 주식회사구조상“사장”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經理는 주식회사의 일사의 경영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필요 상설기관으로 이사회가 선임한 전문경영인으로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經理의 직무권한은 대단히 광범위하며(제119조)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을 담당한다. 經理는 이사회에 구성원을 겸할 수 있으며,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을 받는다.(제61조)

23) 정용상, 전계논문, 10~12면 참조.

로 물려와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실권을 장악하여 결국은 이사회를 형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중국 회사의 주식은 유통주식과 비유통주식으로 나누어진다. 비유통주식은 국유로서 회사의 총발행주식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는 회사의 국가지분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가 대주주인 셈인 것이다. 이를 중국에서는 일고독대(一股獨大)현상이라고 한다. 일고독대는 지배주주의 지위 남용, 중소주주의 이익침해 등의 폐해를 낳고 있다고 한다.

또한 중국에서는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즉 회사의 경영권을 주로 임원이 행사하는 내부자지배현상으로 이사는 임원의 견제를 받아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특이한 기업환경인 경리의 문제이다. 경리와 이사장 중 누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중국내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벌이고 있다. 한국의 실제에 비추어 볼 때, 이사장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해석할 수 있고, 그 법률적 지위와 권한도 비슷하다. 경리는 사장 또는 지배인 정도로 보면 될 것이다. 한국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배인에 대한 개념이 중국회사법상 경리와 그 권한이 성격상 유사한 면이 있다.

제3장 中國의 社外理事制度

제1절 中國 企業支配構造의 問題

중국공산당 제14기 5중전회에서는 기업지배구조개혁의 목적은 회사(특히 상장 회사)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증권시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에 있다고 하였다.

그 동안 중국에는 1100여개의 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그 자본가치는 총 5조억위안의 규모에 달하였다. 그러나 중국 자본시장에서는 불법적인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대주주가 상장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중소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등의 대주주의 횡포와 같은 것이다. 게다가 상장회사가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자본시장에 혼동을 초래하는 주가조작행위는 중국 자본시장에 암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중국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의 투자 적극성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 모든 문제는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에 있다고 보고 있다.²⁴⁾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은 주로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즉 일고독대(一股獨大)의 출현, 이사회 독립성 결여, 감사회의 형해화이다. 이하에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본다.

1. 일고독대(一股獨大)현상의 출현

중국 주식은 크게 유통주식과 비유통주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비유통주식이 중국의 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비유통주식이 유통주식보다 비율이 높다. 비유통주식은 대부분이 국유주식이다. 2004년에 상해(上海)와 심천(深圳)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총 5066.43억 주이며, 이 가운데 유통주식의 총수는 1732.37억

24) 孫陽,胡楊梅, 「公司治理与獨立董事案例」,清華大學出版社, 2003, 前言.

주로 34.19%에 불과하고, 비유통주식은 3333.97억 주로 65.81%를 차지하였다. 1992년 비유통주식의 69.25%와 비교하면 내린 추세지만 2002년의 65.34%와 비교하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유통주식의 비중은 12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비유통주식은 국유주식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 말에 국유주식은 2675.42억 주이며, 국유주식은 비유통주식의 47.22%를 차지하고, 2004년에 52.82%로 올라갔다.²⁵⁾ 위 현상을 국유주식의 ‘일고독대(一股獨大)’라고 한다.

즉 어느 한 주식이 총 주식의 50%이상을 차지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일고독대는 중국 증권시장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국유기업을 개혁하면서 공유제의 주체지위를 유지하고 국유자산 가치의 하락을 예방하기 위해 중국주식시장에 유통주식과 비유통주식이 나타났고, 비유통주식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고권분치(股權分置)체도로 인하여 이익분치(利益分置)를 초래하였고, 이익분치는 일고독대를 초래하였다. 중국상장회사에서 발행한 유통주식과 비유통주식은 유통여부 및 지주비용 외에 다른 기타 권리는 모두 같다. 이 문제는 중국 주식시장에 중요한 문제이고 주주의 권리, 의무, 수익 및 위험성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익분치는 비유통주식 주주의 이익과 유통주식 주주의 이익, 지배주주의 이익과 중소주주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말한다. 일고독대로 인하여 지배주주는 이사회를 지배하고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주주에게 손해를 주었다.

2. 이사회 독립성 결여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최대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관이지만, 사실은 이사로 활동한 주주가 기업지배구조에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고 주주는 이사로 활동한 주주에게 복종하게 되며 심지어는 이사회에 들어가지 못한 주주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기도 한다. 하지만 내부자가 우위에 있으면 회사의 지배권은 주로 임원에게 있게 되어 이사는 관리경영임원에게 견제를 받고 전체주주이익을 대표할 수 없게 된다.

25) 김진수, 「중국상장회사지배구조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5. 17~18면.

중국주식회사는 주식제개편을 통해서 많은 폐단을 수정하였지만 아직도 수정할 여지가 남아 있다. 즉 하나는 이사장과 경리의 합치이며, 또 하나는 경영진이 이사회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사내이사는 인원수, 실제권한행사 등의 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이사회는 거의 내부자의 손에 잡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제1주주는 이사회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여 제1주주가 회사와 혼연일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이사회가 독립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3. 감사회의 형해화

감사회의 선임부터 보수, 승진까지 이사장과 사장에 의하여 결정됨에 따라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회사의 고급관리임원에 대한 독립적, 객관적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필요한 결정권이나 재정권이 이사회와 경영관리진의 견제를 받아 유효한 감독수단이 결여되어 있다.²⁶⁾

이상과 같이 중국의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나타난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2005년에 회사법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특이한 점이 사외이사제도²⁷⁾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는 일고독대의 폐단, 독립성이 결여된 이사회, 형해화된 감사회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을 회사 밖에서 찾아 회사내부에 투입하고자하는 법정책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2005년에 회사법을 개정하게 된 배경과 사외이사제도의 내용을 살펴본다.

제2절 現行法上 社外理事制度

1. 2005년 회사법 개정의 배경

26) 楊敏華, "中國公司治理——獨立董事之研究", 「全國律師」, 2004年 7月号, 79~80면.

27) 사외이사를 중국에서는 獨立董事라고 한다.

1) 1993년 회사법의 시대적 한계

1993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4차 중앙위원회의 제3차 총회에서 “사회주의경제체제 건설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결정”을 통과시킴으로써 현대기업체계에 대한 개념을 진전시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강조하고, “사적·개인·외국인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소유구조를 인정하였다.

1993년 회사법 제정 당시는 중국에서 사회주의경제체제를 시작하려는 초기 시기이며 그 당시의 주요 목적은 국유기업의 개혁이므로 회사법에 국유기업개혁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았다. 그러나 기업의 소유제에 따라 기업의 대우도 많이 달랐는데, 정부는 비국유기업보다 국유기업에 지원을 많이 하였다. 따라서 각 기업은 정부로부터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하여 기업들의 불만도 회사법 개정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1) WTO 가입

지난 2001년 11월 10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회의에서 중국은 143번째로 WTO 가입국이 되었다. 중국의 WTO가입은 국유기업에 중대한 환경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국가의 지원을 받아온 국유기업 중 공업과 금융서비스업 분야에 충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 국유기업은 그동안 낮은 이자율의 정책대출을 통한 자본비용 보조, 관세를 통한 가격보조, 그리고 시장쿼터에 의한 판매선 확보 등의 정부지원을 받아왔는데, 이런 보호조치가 상실될 경우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이 따르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²⁸⁾ 1992년 이전에는 기존의 국유기업들 간에는 경쟁관계에 있지 않았으나 1992년 이후부터는 중국 국내시장 장악을 위한 다국적기업의 진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들 기업이 점점 더 중국의 국유기업과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특히 중국이 국제적으로 비교열세와 경쟁열세에 있는 산업분야의 신규진입기업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²⁹⁾ 이러한 중국내의 경제에 일대 변혁을 초래하는 중국의 WTO가입은 국유기업에 대하여 보다

28) 林毅夫, “以加入WTO爲契機推進國有企業改革”, 「管理世界」, 2001, 第2期.

29) 박변순, 「최근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 삼성경제연구소, 2001. 8. 제6면.

더 강한 기업구조조정과 대외개방을 촉진하게 되었는데, 이를 위하여 2005년에 회사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2) 1993년의 회사법의 한계

① 1993년 회사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회사설립이 자유롭지 못하였다. 이는 중국의 산업구조의 다양성과 팽창하는 경제규모에 맞춰 설립하고자 하는 신규기업의 진출을 막는 장애가 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법제도이다. 또한 주식회사의 자본제도에 있어서도 총액인수주의를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자본금도 비교적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도 회사설립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② 1993년의 회사법에 회사의 기관간의 권한배분관계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기관간에 권한을 명확히 하여야 경영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 경영진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사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일고독대의 연장선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경향, 즉 당간부를 사외이사로 과견하는 등의 구습에서 탈피하여 회사경영의 전문성을 고려한 사외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토록하자는 경제계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 ③ 주주, 특히 중소주주의 합법적 권익의 보호에 대한 메카니즘이 완전하지 못하며 회사의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 및 사회공중의 이익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수단도 부족하다. ④ 상장회사의 감독·관리 중에 나타난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부족하여 자본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불리하다. ⑥ 회사 및 이사, 감사, 경영진의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못하고, 특히 경영진인 경리의 권한은 방대하게 인정하면서 책임과 관련해서는 애매한 실정이다.³⁰⁾

이와 같이 1993년 회사법은 중국의 국유기업의 현대화 내지 주식제도화에 초점을 두어 기업경영의 시장경제화를 촉진코자 하였으나, 2001년 WTO 가입과 더불어 중국경제의 다양성과 세계경제로의 편입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손질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즉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 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대

30) 王保樹, "中國公司法最近的修改動向", 218~219면.

한 강력한 조정은 중국에도 영향을 미쳐 회사법의 많은 제도를 개편하게 되었다. 2005년 개정회사법(신회사법으로 명명함)에 여러 분야의 제도를 개정하였지만 사외이사제도를 회사기본법에 명문으로 제도화한 것이 특이하다.

2.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주요 내용

1) 2005년 회사법상 이사회제도

2005년 10월 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개정회사법³¹⁾이 통과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신 회사법은 모두 13장 21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이사에 관한 규정은 주로 제4장 제3절(제109조~제117조)에 집중되어 있고, 그 개괄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사는 경영결정과 일상운영의 실제집행자이며 주요 내부이사(집행이사)와 외부이사(비집행이사)로 나뉜다. 이사의 임기³²⁾는 최장 3년으로 정하고 있고 이사회 선거를 거쳐서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 구성원³³⁾은 5~19명이며 이사회에 종업원대표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23조에서는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중국에서는 독립동사(獨立董事)라는 용어를 쓴다.)를 두도록 하고 있다.

2) 사외이사의 정의

신 회사법 제123조는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사외이사의 설치여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법정개념은 정의하고 있지 않다.

중국내에서도 사외이사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다. 관련법규의 규정, 학설 및 연구기관의 보고서는 사외이사에 대해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지만 다음과

31) 이하 1993년 회사법을 구회사법으로 약칭하고 2005년 회사법을 신회사법으로 약칭한다.

32) 이사의 임기는 회사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장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재임이 가능하다.(제46조 제1항)

33) 주식회사 이사회 구성원은 5명 내지 19명으로 한다. 이사회에 종업원대표를 둘 수 있다. 종업원대표는 종업원대표회의, 종업원회의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회사종업원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선출되어야 한다.(제109조)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회사에서 이사 외에 아무런 직무를 담당하지 않고 주주 특히 대주주 및 고급 경영관리진과의 사이에 독립성을 유지하고, 이사회에 참여하여 근면(勤勉)·성신(誠信)의무를 지는 외부이사를 사외이사라고 한다.³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2001년 8월에 상장회사 지배구조의 개선과 상장회사의 규범화 운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제도 설치에 대한 지도의견」(關於在上市公司建立獨立董事制度的指導意見:이하 ‘지도의견’으로 약칭함)을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사외이사제도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 규정이다. 지도의견 제2조 1항에서 사외이사는 회사에서 이사 외에 아무런 직무를 담당하지 않고 회사 및 지배주주와의 사이에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이사를 지칭한다고 정의 하였다.

즉, 사외이사는 회사에서 사외이사 외에 아무런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비상근 이사로서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회사와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이사라고 할 수 있다.

3) 사외이사의 자격

사외이사는 이사회에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회사법에 정한 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특별히 어떤 종류의 회사에게 요구하는 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한 특별법이나 증권거래소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한 중국의 법규는 회사법, 지도의견 그리고 공무원법 등이 있다. 특히 지도의견은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아주 세세하게 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회사법상 이사의 자격요건과 지도의견의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살펴본다.

(1) 회사법상 이사의 자격요건

중국 회사법 제147조는 이사의 자격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열거하여 다음에 해

34) 金曉斌 塗建, 「獨立董事制度研究: 權利 義務 和責任을 중심으로」. 上海證券交易所 연구센터, 2003년, 230~232면.

당하는 자는 이사(감사, 고급관리임원에게도 적용)가 될 수 없다.

①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 받는 자(무능력자).

② 경제사범(부패·수뢰·권리침해·권리남용 또는 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한 혐의로 형사 처벌된 자) 또는 참정권이 박탈되어 집행만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③ 파산 또는 청산만료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회사의 이사, 공장장, 경리를 담당하면서 해당 회사의 파산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

④ 위법행위로 영업허가가 말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⑤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비교적 과도한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신용불량자.

이와 같이 회사법에 이사의 결격사유를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여 회사가 이에 위반하여 이사(감사, 고급관리임원)를 선임(또는 임명, 초빙 포함)한 경우에 그 선임을 무효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사(감사, 고급관리임원)가 재임 중에 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이사를 면직하도록 하고 있다.

(2) 공무원법상 이사의 자격요건

공무원의 회사 이사적격여부에 대하여 1993년 회사법에서는 금지하였지만 2005년 회사법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2006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공무원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기관인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國有資產監督管理委員會)는 국유독자(國有獨資)회사의 이사회에 공무원을 이사로서 임명하여 파견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이사적격여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한다.³⁵⁾

(3) 지도의견의 사외이사 자격요건

지도의견 제2조는 사외이사가 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률 행정법규 및 기타 관련규정에 의하여 상장회사 이사가 될 수 있는 자

35) 趙旭東, 「公司法學」, 高等教育出版社, 2006, 386면.

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 ② 지도의견 제3조에서 요구하는 독립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 ③ 상장회사운영에 관한 기본적 지식과 관련법규를 알고 있어야 한다.
- ④ 법률, 경제 또는 기타 사외이사의 직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력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⑤ 기타(이외의 조건은 개별 회사의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지도의견 제3조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을 정하고 있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한다.

- ① 상장회사 혹은 그 회사의 관계회사의 임원이나 임원의 직계존비속 또는 주요사회관계 (직계존비속은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을 말하며, 주요사회관계는 형제, 자매, 장인, 장모,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을 말한다).
- ②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혹은 상장회사의 10대 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및 주주의 직계존비속.
- ③ 직접이나 간접적 상장회사 발행한 주식의 5% 이상 주주단위 혹은 5대주주단위에서 임직한 임원 및 직계존비속.
- ④ 최근 1년에 앞 3 가지 상황의 인원
- ⑤ 상장회사나 부속기업을 위한 재무 법률 자문서비스 제공한 인원.
- ⑥ 회사정관에서 정한 기타 인원.
- ⑦ 중국증감회에서 인가한 기타 인원.

4) 이사회 권한

사외이사도 내부이사와 같이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법은 이사회 권한(제109조)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주주총회 소집과 주주총회에 대한 업무보고
- ② 주주총회의 결의 집행

- ③ 회사의 경영계획과 투자방안 결정
- ④ 회사의 연도재무예산편성과 결산안 작성
- ⑤ 회사의 이익배당안과 결손보전안의 작성
- ⑥ 자본금의 증감 및 사채발행안의 작성
- ⑦ 회사의 합병·분할·해산안의 작성
- ⑧ 회사내부관리기구의 설치에 관한 결정
- ⑨ 회사 경리의 선임·해임 및 그 보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경리의 요청에 의하여 회사 부경리, 재무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며 그 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결정
- ⑩ 회사의 기본관리규정을 제정
- ⑪ 회사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무를 수행

5) 사외이사의 추천

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현재 중국의 상장회사마다 모두 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외이사의 추천은 대주주나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중국의 이사회구성상의 문제는 국유기업을 회사화하는 과정에서 정부지분에 의해 당간부 등이 소위 중국식 사외이사로 몰려와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사권력을 장악한 결과 이사회를 형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유주의 일고독대 또는 이미 정치권력이 파견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추천은 회사민주주의 방식이라고 할 수 없기도 하거니와 추천된 사외이사들에게 독립성을 기대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대주주나 내부추천 방식을 배제하는 추천방식을 지도의견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장회사의 이사회, 감사회 및 회사 발행주식의 1%를 소유한 주주는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의 선임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사외이사의 추천은 추천 전에 피추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추천자는 피추천자의 직업, 학력, 상세한 직업경력, 전부의 겸직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추천자는 사외이사를 담당할 자격과 독립성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선

언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를 선거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전에 당해회사는 피추천자와 관련된 서류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회사가 상장한 증권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회사 이사회는 피추천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이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15일(공휴일 제외)내에 사외이사의 선임자격과 독립성에 대한 심사를 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심사 결과 피추천자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외이사후보로 할 수 없다. 이사회는 사외이사 선출을 위한 주주총회에 후보자에 대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6) 사외이사의 권한

사외이사의 권한은 이사가 가지는 권한 외에도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중대관련거래에 대한 부결권(否決權)은 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중대관련거래는 사외이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외이사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사회에 제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외이사는 중대관련거래에 대한 부결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외부 회계사무소 등 컨설팅을 초빙하는 권리, 회사발전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관한 독립적 의견을 발표할 권리도 있다.

지도의견 제5조에서는 사외이사의 특별 권한을 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는 회사법 및 기타관련 법에서 이사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게 다음과 같은 특별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① 중대관련거래(상장회사는 관련인과의 거래총액이 300만 위안(元) 이상이거나 최근의 회사 순자산 5% 이상의 거래를 말한다)를 먼저 사외이사에게 동의를 얻어서 이사회로 제출하여 토의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에 회계사무소를 초빙 혹은 해임을 제의한다.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제의한다.

- ④ 이사회 의 소집을 제의한다.
- ⑤ 독립적인 외부감사기구와 자문기관을 초빙한다.
- ⑥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주주에게 투표권을 모집할 수 있다.

(2) 사외이사가 위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사진원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위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거나 위 권한의 행사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회사는 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4) 상장회사 이사회내의 하부기관으로서 급여, 심사, 추천 등을 담당할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위원회 구성원의 1/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사외이사의 권한범위를 확대하여 사외이사의 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제6조에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제6조는 사외이사에게 상장회사의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독립적인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1) 사외이사는 위 권한 외에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독립적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이사의 추천 또는 선·해임에 관한 사항
- ② 고급관리임원의 초빙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 ③ 이사, 고급관리임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 ④ 상장회사의 주주, 실제 지배자 및 관련기업과 거래총액이 300만 위안 이상 또는 회사 순자산의 5% 이상의 대역나 기타 자금거래에 대하여 회사의 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사항
- ⑤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공시의무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 사외이사의 의견을 공시하여야 하며, 사외이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전부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외이사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여 사외이사제도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이사회 의 독립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위 지도의견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2001년에 규정한 것이다. 중국이

1993년 회사법을 개정코자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2004년 중국의 학자들이 제안한 중국회사법개정안건의서(中國公司法修改草案建議稿)³⁶⁾에 사외이사의 권한의 범위를 지도의견에 기초한 의견을 담고 있었다.

또한 2004년 중국증권감독위원회는 「사회공중주주 합법이익의 보호에 관한 약간 규정, (意見收集稿)」³⁷⁾에서 사외이사에게 소수주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대관련거래에 대한 강화된 감시감독, 회계사무소의 초빙, 외부감사기관의 초빙 등의 특별권한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⁸⁾

7) 사외이사의 퇴임·해임

회사법상 이사의 퇴임 또는 해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사외이사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고 유능한 적격자의 사외이사로의 진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외이사의 퇴임·해임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사외이사가 그에 맞춰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36) 건의서 제138조: 사외이사는 본법과 기타 관련법규에서 이사에게 부여한 권한 외에 다음과 같은 특별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1) 중대관련거래는 사외이사의 동의 후에 이사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사외이사가 중대관련거래에 대한 판단을 하기위하여 관련전문기관을 초빙해서 자문을 청취할 수 있으며 사외이사는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 (2) 이사회에 회계사무소를 초빙 혹은 임면을 제안할 수 있다.
- (3)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제안할 수 있다.
- (4) 이사회에 소집을 제안할 수 있다.
- (5) 독립적 외부감사기관과 자문기구를 초빙할 수 있다.
- (6)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의 소집 전에 사외이사 전원의 1/2이사의 동의를 얻어 공개적으로 주주에게 투표권을 모집할 수 있다.

사외이사는 위 권한을 행사한 외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독립적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 (1) 이사의 추천 또는 임면에 관한 사항
- (2) 고급관리임원의 초빙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 (3) 이사, 고급관리임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 (4) 상장회사의 주주, 실제지배자 및 관련기업과의 거래총액이 300만 위안 이상 또는 회사 순자산 5% 이상의 대역나 기타 자금거래에 대하여 회사의 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사항
- (5)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6) 기타 회사정관에서 정한 사항

37) 北京晨報 「關於加強社會公眾股股東合法權益保護的若干規定征求意见稿」, 2004. 9. 27 발표. “證監會授予獨董三項特權 中國獨董新政高調出場”, <http://finance.sina.com.cn> 2004年09月28日

38)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 (1) 중대관련거래 또는 회계사무소를 초빙 해임할 경우에는 1/2이상의 사외이사가 동의하여야 이사회에 제출하여 심의할 수 있다.
- (2)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전원의 동의를 얻어 외부회계사무소를 초빙하여 상장회사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고 관련비용은 상장회사가 부담한다.
- (3)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누적투표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외이사의 퇴임·해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중국의 학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퇴임·해임과 관련한 보고서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①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에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사외이사의 독립성이란 주주, 경영진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위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독립성을 결한 경우에는 사외이사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의 퇴임이 바람직 할 것이다. 즉 지도의견의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하여 사외이사의 퇴임·해임을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② 사외이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퇴임해임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사외이사가 3회 이상 연속적으로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또는 회계연도에 직접 이사회에 출석한 횟수가 총 횟수의 2/3에 부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 해임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이사의 근면·성신의무를 해태한 경우로서 작위의무위반으로 볼 수 있다.

③ 사외이사의 의무를 해태하여(예컨대, 근면성신의무불이행)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도 사외이사의 퇴임·해임의 사유가 될 수 있다.³⁹⁾

3. 중국의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제규정

1) 서설

중국의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은 외부흡수에서 내부소화까지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의 기업이 국외에서 상장한 회사가 점증함에 따라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점점 제고되었다.

1988년에 H주식⁴⁰⁾을 상장한 중국의 기업들은 홍콩증권거래소의 요구에 의하여

39) 金曉斌·塗建, 전계서, 237면.

40) H주식은 중국 국내기업은 홍콩(HongKong)증권거래소에서 상장한 주식을 말한다.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시발점으로 하여 중국의 기업들도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그 후 일부분의 상장회사의 불법행위와 회계분식사건은 보다 효과적인 감독제도와 기업지배구조를 도입하기 위해 서둘렀는데, 사외이사제도는 그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다. 사외이사제도는 중국내의 실제적인 필요로 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⁴¹⁾ 이하에서 중국의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각 기관의 규정을 살펴본다.

2)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제규정

(1) 「상장회사정관가이드라인」

1997년 중국증권감독위원회는 상장회사정관가이드라인(上市公司章程指引:가이드라인으로 약칭 함) 제121조⁴²⁾에서 상장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사외이사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중국의 사외이사에 관한 최초의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은 중국 증권시장의 빠른 발전과 2005년 회사법과 증권법 동시 개정으로 일부규정은 실제 필요에 따라가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2006년 3월 16일에 개정 상장회사정관가이드라인(上市公司章程指引 (2006年修訂)약칭: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개정 가이드라인의 특징은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이사회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⁴³⁾

(2) 「경외에서 상장한 회사의 규범적 운영과 개혁을 위한 심화 추진에 관한 의견」

41) 邱永紅, “我國獨立董事制度的現存問題與法律對策”, 「月旦民商法雜誌」, 2007年第1期, 總第15期

42) 제121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사외이사를 설치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를 담당할 수 없다. (1) 당해 회사의 주주 혹은 법인주주의 임원 (2) 회사내부임원(예컨대 회사의 사장 혹은 회사고용인) (3) 회사의 관련인 혹은 회사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

43) 동 가이드라인 제46조 제1항

1999년 3월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중국증권감독위원회가 공동으로 규정한 「경외에서 상장한 회사의 규범적 운영과 개혁의 심화 추진에 관한 의견」(關於進一步促進境外上市公司規範運作和深化改革的意見)에서는 “이사회는 이사회 소집 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어 사외이사에게 의사안건과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사외이사가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의사안건이 불명확하다고 여기면 이사회소집의 연기 혹은 해당부분의 연기를 제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⁴⁴⁾ 또한 “H주식발행회사는 사외이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제출한 의견을 이사회 결의에서 명시하여야 한다. 회사의 중대관련거래는 사외이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명 이상의 사외이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제안할 수 있고, 사외이사는 주주총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기타 관련부서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⁴⁵⁾

(3) 「증권회사내부지배에 관한 가이드라인」(證券公司內控指引)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2001년 1월 31일에 발표하였는바, 증권회사의 규범화와 금융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증권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증권회사 사외이사의 감독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여 내부자지배현상을 불식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후에 A주식⁴⁶⁾ B주식⁴⁷⁾을 발행하는 상장회사에서도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4)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제도를 설치에 대한 지도의견」(關於在上市公司建立獨立董事制度的指導意見)

2001년 8월22일에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2001년 8월 22일에 공포한 것으로 상장회사 지배구조의 개선과 상장회사의 모범적인 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목

44) 동 의견 제3조

45) 동 의견 제6조

46) A주식이란 중국 기업이 중국 국내에 상장하여 발행한 주식이다. 중국화폐 인민폐로 구입한다.

47) B주식이란 A주식과 같이 중국 기업이 중국국내에 상장하여 발행한 주식이지만 외환으로만 구입할 수 있다.

적을 담고 있다. 중국의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제규정 중에서 사외이사에 대하여 비교적 체계적이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1조 3항에서는 2003년 6월 30일이 후부터 상장회사는 이사회 구성을 사외이사를 최소 1/3이상을 두도록 하였다. 사외이사의 수, 선임조건, 독립성, 추천, 선·해임, 역할, 권한, 직책 및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여야 할 회사의 의무 등을 명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외이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5) 「상장회사지배구조모범」

2002년 1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경제무역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규정으로서 상장회사의 현대화와 모범적인 운영에 목적을 둔 것으로서 사외이사의 개념, 의무, 사외이사의 적격조건, 선임 및 직책 등을 정하고 있다.

(6) 2002년 6월 4일 중국인민은행⁴⁸⁾은 주식제 상업은행의 회사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상업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2개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① 「주식제상업은행 사외이사와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股份制商業銀行獨立董事和外部監事制度指引)

이 규정에서 사외이사의 적격요건, 추천, 선임·해임, 권리, 의무, 책임 및 보수 등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앞에 언급한 법규와 비슷하지만 주식제 상업은행에 적용하기 때문에 약간 같지 않는 규정도 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⁴⁹⁾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가 없고 만기 후에 사외이사를 연임할 수 없지만 이사를 담당할 수 있다.⁵⁰⁾ 그리고 제11조 2항에서는 사외이사에게 취임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② 「주식제상업은행회사지배구조가이드라인」(股份制商業銀行公司治理指引)

48) 商業銀行과 달리 국가기관이다.

49) 주식제상업은행 사외이사와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4조.

50) 위 가이드라인, 제9조.

주식제 상업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상업은행의 안전한 경영과 지속적 발전 및 예금자와 중소기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주요내용은 주주, 주주총회, 이사, 이사회, 감사, 감사회, 고급관리진 및 인센티브시스템에 대한 규정이다.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규정은 제30조와 제31조에 집중되어 있다.

즉 상업은행에서는 사외이사제도를 두도록 하고 사외이사의 취임자격, 추천, 선임, 해임 및 권리의무는 중국인민은행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제31조에서는 사외이사의 책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사외이사는 이사회나 이사, 고급관리진, 상업은행기관 및 관련임원이 법규 및 상업은행 정관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7) 「공개 발행 증권회사의 중대 관련거래 등에 관한 심사요구」(關於公開發行證券的公司重大關聯交易等事項的審核要求)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2002년 9월 9일에 발표한 것으로⁵¹⁾ 사외이사는 관련거래의 공정성 및 법적 절차의 이행여부 등 4가지 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여 사외이사의 권한을 확대시켰다. 즉, 회사에 중대한 관련거래⁵²⁾가 존재하는 경우 사외이사의 관련거래의 공정성 및 법정비준절차의 이행여부에 관한 의견, 자산감소에 대한 대응정책의 적정성 및 회사운영자금에 대한 의견, 중대의 문서항⁵³⁾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의견, 최근 1년간 비경상성 손익이 이윤총액의 20%이상인 경우 향후 경상성수익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8) 「보험회사 사외이사의 관리에 관한 잠행방법」(保險公司獨立董事管理暫行方法: 이하 잠행방법으로 약칭 함)

2007년4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⁵⁴⁾는 보험회사 사외이사제도의 건전한 운영

51) 「주식발행심해기준 備忘錄」 제14호

52) 중대한 관련거래이란 관련거래총액이 3,000만 元을 초과하거나 최근 기준 순자산의 5%를 초과하는 거래를 말한다.

53) 중대의문서항이란 최근 12개월 동안 누적손실액이 최근 기준 순자산의 10%이상을 말한다.

과 위험을 예방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잠행방법을 발표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사외이사와 관련된 규정에 기초하여 비교적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만들었다.

위 규정들과 유사점이 많지만 사외이사에 관한 내용 대폭 엄격해지고 새로운 내용도 신설하였다. 중국 사외이사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예상되는 지침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잠행방법 제2조는 “사외이사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이사외의 직무를 담당하지 않고 회사, 지배주주, 실제지배자와의 사이에 회사업무를 판단함에 아무런 관계를 가지지 않는 이사를 말한다.”고 사외이사를 정의하고 있다. 제3조는 사외이사는 누구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고 회사와 소수주주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근면성신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사외이사 선임자격을 정하고 있다. 제5조는 긍정적인 자격기준(Positive list)을 열거하고 있다. 즉, 사외이사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사 학위자 이상이어야 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사회심계위원회위원을 담당하는 사외이사는 5년 이상의 재무나 법률 업무경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제2항). 이사회급여위원회위원을 담당하는 사외이사는 비교적 강한 분별과 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및 5년 이상 기업이나 국가기관에서의 관리경력을 가진 자라야 한다. 이처럼 사외이사의 학력 및 이사회위원회에 취임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은 잠행방법이 처음이다.

제6조는 결격사유(Negative list)를 명시하고 있다. 즉, 제1항은 최근 3년에 보험회사 주식 5%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지주나 10대 법인지주에서 취임한 임원과 그의 친족. 제2항은 최근 3년에 보험회사나 실제지배기업에서 취임한 임원과 그의 친족. 제3항은 최근 1년에 보험회사에 법률, 심계, 관리자문 등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 임원, 당해보험회사와 업무제휴관계에 있는 은행, 법률회사, 자문기관 등의 지배주주 및 고급관리임원,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에 의문이 있는 자 등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제7조는 사외이사는 동업종의 보험회사에 취업할 수 없고, 동시에 4개사 이상의 회사에 사외이사로 취임할 수 없다고 한다.

54) 영문으로 표시하면 China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이며 약칭은 CIRC이다. 1998년 11월 18일에 설립하여 국무원의 수권을 받아 중국의 보험시장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출처: <http://www.circ.gov.cn/Portal0/default59.htm>

제9조는 보험회사이사회에 일정 비율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즉, 2007년 6월 30일 이전에 이사회에 2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2006년말 회사 총자산 50억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2007년 12월 30일 이전에 1/3이상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사외이사는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외이사 비례정원에 미달될 수 있다. 이에 제15조는 회사는 3개월 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새로운 사외이사를 선출하여 결원을 보충하도록 하고 있다.

사외이사는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독립성을 상실하거나 사외이사의 직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사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를 해야 한다. 이때의 해임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2/3이상으로 하고 있다(제16조 내지 제18조).

제4장에서는 사외이사의 의무와 권한을 정하고 있다. 제20조에서 사외이사의 심사권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중대관련거래, 이사의 추천, 선·해임, 고급관리 의 선·해임, 이사와 고급관리진의 보수, 이익배당안, 경영계획 외의 투자, 임대차, 자산매매, 담보 등이다. 이에 대하여 사외이사가 결의에 대한 포기, 반대 혹은 의견을 발표하기 어려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제21조). 제25조는 사외이사의 정보접근권을 정하고 있는데, 자료 불충분의 경우 2명 이상의 사외이사가 연합하여 관련 의안의 심의연기 및 이사회소집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이사회는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회의참석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제31조는 이사회회의에 연속 3회 출석하지 못하면 회사는 3개월 내에 회의를 열어서 해당 사외이사를 해임시키고 새로운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사외이사가 한 임기에 5회 이상 회의를 출석하지 않으면 연임하지 못한다고 규정을 하였다.

또한 제29조는 사외이사가 매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할 내용을 정하였는데, 이사회 참석상황(직접 참석 못한 경우에 대한 횟수와 원인), 의견발표상황(포기 또는 반대의 이유, 의견을 발표할 수 없었던 이유), 회사경영에 대한 이해 및 문제, 회사경영관리의 개선을 위한 공헌 및 업적, 회계연도에 대한 평가 및 이사진과 관리진의 업무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등이다. 이와 같이 사외이사에게 광범위한 권한과 사외이사로서 주주총회에 보고의무를 부과하여 사외이사가 실질적으

로 회사경영에 관여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외이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사외이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계획 하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증권업협회의 관리 하에 북경, 상해, 심천에서 사외이사교육을 실시하고 사외이사를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⁵⁵⁾.

4. 현행제도의 장단점

사외이사제도는 중국기업개혁의 새로운 시도로써 정식 실시한지 6년이나 되었다. 이사회는 회사로부터 독립한 사외이사를 영입하여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감독하여 회사전체이익을 보호할 역할을 가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중국 국내에서도 학자들과 실무진을 중심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평가는 주로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다. 아래에서는 중국내의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평가를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장점

(1) 감독기능

중국에서 일고독대(一股獨大)현상은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이라는 폐단을 낳고 있다. 즉 회사에 강력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가 이사회를 장악하여 권리를 남용하여 전체주주의 이익을 도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회사 경영에 대하여 이사회에 강력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도입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독단적인 경영세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

55) 2001년 7월 청화대학과 공동으로 상장회사 사외이사교육을 시작으로 2001년10월에서 2002년7월까지 北京과 上海에서 14차 사외이사교육반을 배출했다. 사외이사후보자는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면 ‘社外理事任職資格教育證書’, ‘社外理事事後教育證書’를 받는다. 교육시간은 3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사외이사에 취임한 후 2년에 최소 1회 事後교육을 받아야 하며 매회 3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출처: <http://finance.sina.com.cn/stock/stocktalk/20060417/17492506820.shtml>

는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지배주주와 이사를 견제·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일고독대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 독립성

‘지도의견’은 사외이사는 사회관계 및 이익관계 면에서 지배주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배주주의 조정을 받는 이사회 및 경영진과는 다른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경영판단을 할 수 있는 자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할 때 지배주주에 의해 움직이는 내부자지배 현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본다.

(3) 전략결정과 자문

오늘날의 기업경영은 단순히 영리 사업적 측면으로만 단순화 할 수 없는 광범위한 분야까지 고려하는 전문화된 종합적인 경영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의 단순한 경제영역과 활동범위의 시대에는 경영자 단독으로 경영판단과 결정이 무리가 없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날의 경제는 그런 과거의 경영행태로는 기업이 존속할 수가 없다. 기업의 경영판단은 이사회에서 이뤄진다고 한다면 과거의 이사회는 「거수기형 이사회」로도 기업존속이 가능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이해대립적인 투자자를 두고 있는 기업은 이해관계의 조정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대표자형 이사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업환경은 「거수기형 이사회」나 「대표자형 이사회」가 아닌 「전문가형 이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기업환경을 고려해 볼 때 이사회 구성형식보다 이사회 기능에 초점을 둔다면 「전문가형 이사회」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사외이사제도는 대부분 각 영역의 전문가 또는 경험자를 이사로 위촉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경영판단의 전문화와 합리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2) 단점

부정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사외이사제도 자체가 결점을 가지고 있으며, 게다가 중국에서는 사외이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률적 환경이나 사회제도 등이 부족하고 기존기업지배구조에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기상조라고 하며 아래와 같이 단점을 지적하고 있다.

(1) 감사회와 융합하지 않음

중국기업지배구조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 등의 구조로 되어 있다. 중국 회사법상 감사회는 재무회계를 감사하고 이사와 경영진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⁵⁶⁾. 이 감사회의 권한은 사외이사에게 부여된 권한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상호 충돌하여 중첩적인 구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감사회의 이사회 감독권한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감사회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실시하고 있다.

첫째, 사외이사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사외이사제도의 운영이 성공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둘째, 중국의 기업지배구조문제는 제도적, 경제적 및 법률적 등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것이어서 사외이사제도만 도입하면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중국 회사법상의 감사회제도는 독일 감사회제도를 본받아 이사회와 감사회의 관계를 다시 설계하여 이사와 경영진을 감사회의 감독 아래로 두는 구조로 하여 중국의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⁵⁷⁾ 넷째,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면 회사운영비용의 증가로 자원낭비와 감사회와 사외이사의 감독권한의 중첩으로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⁵⁸⁾

(2) 사외이사제도 자체의 결여

사외이사제도의 취지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

56) 중국 회사법 제54조 1호,2호.

57) 郭鋒, "獨董制度的法律困境與出路", 「中國證券報」, 2005, 6, 22.

58) 邱永紅, "我國獨立董事制度的現存問題與法律對策", 「月旦民商法雜誌」, 2007년 제1기,

실이지만 중국의 기업 현실상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고 지적한다. 중국에서 이사회나 경영기관의 구성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대주주의 막강한 영향력은 사외이사의 추천에서부터 선임·취임 및 업무집행까지에 미치고 있으므로 사외이사의 감독역할은 사외이사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기업문화에서 “집단주의” 혹은 “집단본위주의”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만일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독립성을 발휘한다면 다음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한다. 즉 하나는 퇴임을 당하거나 이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여 정상적인 사외이사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이익 혹은 이사회단체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내부자와 타협하게 된다는 것이다.

(3) 사외이사의 비전문성

사외이사제도는 전문가형 이사회를 구성하여 내부자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함인데 현재 중국의 상장회사의 이사회에 사외이사는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비전문가가 대부분이며 사외이사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제3절 中國 社外理事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중국 국내의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정서적인 면에서 아직 친숙하지 않아 실시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내에서 사외이사제도의 실시상황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연구조사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달랐다.

사외이사 인원수의 부족, 독립성 결여, 회사경영업무에 대한 이해의 부족 및 사외이사의 책임과 보수의 불균형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중국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여 중국 기업지배구조를 개선코자한 기대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중국의 사외이사제도 실시상황을 검토하여 중국의 사외이사제도의 현재 상태를 조사·분석하여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과제와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에 검토의 근간 자료들은 주로 上海 증권거래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와 ‘사외이사를 설립한 결과분석’이란 논문에서 인용한 자료들이다.⁵⁹⁾

1. 사외이사 인원수

1) 문제점

2003년 9월 30일까지 상해증권시장의 상장회사에서 99.5%이상의 회사는 사외이사를 초빙했다. 이는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상장회사의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이사회의 1/3이상으로 하여야한다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지시가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회사의 사외이사 인원수는 평균적으로 3.06명이며 이사회구성원인원 27.79%(1/3에 미달)를 차지하였다. 사외이사가 1/3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비율은 미달하는 수치이다.

<표3-1 사외이사 인원수⁶⁰⁾>

사외이사 수	상장회사 수	상장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율
0	4	0.52%
1	2	0.26%
2	230	29.95%
3	323	42.06%
4	148	19.27%
5	47	6.12%
6	8	1.04%
7	5	0.65%
8	1	0.13%

59) 上海증권거래소연구센터, 「中國公司治理報告(2003)」, 가운데 1~4는 萬德資迅데이터(萬德資迅數據庫)를 인용한 것이고 5과6은 上海증권거래소에서 진행한 설문지자료이다. 唐清泉, 羅堯論, “設立獨立董事的效果分析--來自中國上市公司獨立董事的問卷調查”(사외이사의 설치효과분석--중국 상장회사 사외이사에 관한 설문지) 「中國工業經濟」, 2006, 1기. 위 논문에서 나오는 사외이사 이름은 <中國股票市場研究數據>(중국주식시장연구데이터)의 ‘상장회사 지배구조란’과 金融界財經網(금융계재경사이트, www.jrj.com)를 참고로 하였다. 먼저 700명의 사외이사를 샘플로 뽑아서 그 중의 500명에게 설문지를 보냈다. 그 중 122개의 유효한 설문지를 받았다.

60) 上海증권거래소 「中國公司治理報告(2004)」, 第4章, 123면.

2) 개선방법

사외이사의 수 및 선임 비율이 적으면 사외이사가 그 의사를 관철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들의 상호공조를 통해 경영감독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⁶¹⁾ 그러므로 사외이사가 이사회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사결정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상장회사에서 수와 비례를 확대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외이사후보가 부족함에 따라 사외이사의 수 및 선임 비율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사외이사 인력풀⁶²⁾을 설치하거나 사외이사후보 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2. 사외이사 자격요건

1) 문제점

사외이사의 평균연령은 49.5세로 적당하지만, 66세 이상의 사외이사는 208명으로 8.8%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은 사외이사권한의 행사와 절대적인 관계는 없지만 연령이 많은 사외이사의 지식구조, 시간투입 등의 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학력면에서 1050명 사외이사(1298명의 사외이사의 학력에 대해 불투명) 중 학사 이상은 91.62%, 석사 이상은 57.15%로 나왔다. 사외이사의 연령과 학력을 살펴보면 사외이사의 취임자격에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경력별로는 학계출신 사외이사가 38.5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61) 류동하,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국회사무처법제실, 법제현안 제2005-9호(통권 제178호), 2005.11, 14면. 유사견해: 朱筠, 「建立獨立董事制度的回顧與前瞻」, 西南政法大學, 2006年碩士 畢業論文. 19면.

62) 사외이사를 담당할 수 있는 유능인재들은 다음과 같은데서 찾을 수 있다.

中國證券業協會—www.sac.net.cn

中國註冊會計師協會—www.cicpa.org.cn

中華全國律師協會—www.acla.org.cn

香港董事學會—www.hkiod.com

香港會計師公會—www.hkicpa.org.hk

香港財務分析師學會—www.hksfa.org

Natalya Arabova : IFC PEP-China 「有效董事會 — 董事工具手冊」2006. www.cgchina.org

학자로서의 지식요건과 시간요건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만 회사운영에 관한 실제 경험과 바쁜 일정으로 회사업무에 투입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적된다. 또한 관련업종협회나 각급정치협상위원회나 정년퇴임한 간부출신 사외이사는 12.7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인맥관계를 이용하려는 의도 하에 선임된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감시와 감독역할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삼자기업출신 사외이사는 겨우 10.5%에 불과하여 이 부분의 사외이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삼자기업의 관리경험과 전문기술이 중국 상장 회사에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2 연령별⁶³⁾>

연령별	26~35	36~45	46~55	56~65	66~75	76~85·
사외이사 인원수	155	788	677	520	198	10
비율	6.60	33.56	28.83	22.15	8.43	0.43

<표 3-3 학력⁶⁴⁾>

학력	사외이사 인원수	비율
박사	297	28.29%
석사	303	28.86%
학사	362	34.485
2년제	81	7.71%
2년제 이하	7	0.67%
합계	1050	100%

<표 3-4 사외이사 출신⁶⁵⁾>

63) 上海증권거래소, 「中國公司治理報告(2004)」, 第4章, 124면.

64) 上海증권거래소, 「中國公司治理報告(2004)」, 124면.

65) 上海증권거래소, 「中國公司治理報告(2004)」, 124면.

출신별	학교	기업	변호사 사무실	회계사 사무실	연구 설계원	관련 협회	정년퇴 임인원	기타 직장	투자자 문회사	증권 회사	삼자 기업	人大 政協	합계
인원수	894	282	181	172	169	141	132	109	98	83	35	23	2319
비율	38.55	12.16	7.80	7.42	7.29	6.08	5.69	4.70	4.23	3.58	10.51	0.99	100

단위: 수, %

2) 개선방법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전술한 각 종의 가이드라인, 지도의견, 잠행방법 등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요건을 회사 기본법인 회사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2005년 회사법 제123조에 사외이사제도를 천명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 일임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원은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의 시급한 제시가 필요하다.

현재 조사에 의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논한다면 사외이사의 인맥을 이용코자 하는 의도에서 선임하는 것은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 오늘날의 기업경영은 전문가이사회를 요구하는데 이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학계출신의 사외이사로의 진출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외이사의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선 그 전문성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자라야 할 것이다.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실질적인 업무수행일을 정하는 방법인 위 잠행방법 제31조와 같은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⁶⁶⁾

3. 사외이사 직무수행여건

1) 문제점

66) 上海증권거래소, 「中國公司治理報告(2004)」, 136면.

(1) 사외이사의 역할에 아직도 많은 제한이 있다. 즉 지배주주의 영향력에 지배되고 있으며(46%), 사외이사 자신 스스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46%), 현행 법률제도의 제약 때문에 사외이사의 역할수행이 어렵다(51%)는 응답을 하고 있다. 특히 법률제도에 의한 제약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사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요구권이 사외이사에게 없기 때문이다. 집행방법 제25조와 같은 정보접근권을 기본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2) 사외이사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의안의 배경자료를 이해하기 어렵다’(65%)이다. 사외이사의 비상근성 즉 회사일상운영관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사외이사의 전문지식과 실제관리경험을 회사에 제공할 수 없는 주요한 원인이다.

사외이사의 역할을 잘 발휘하려면 정보의 획득(79%)과 시간투입(58%)이 중요하다를 선택하였고, ‘보수의 향상’(32%)은 중요한 원인이 아니었다. 사외이사는 고급지적인력으로써 고급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회사에 대한 투자는 주로 정보의 수집과 이해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67)

(3) 사외이사는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78%의 사외이사는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접할 수 없음’을 택하였다. 사외이사의 비상근성으로 인하여 회사정보의 획득은 사외이사가 회사운영상황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71%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출신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사외이사는 보통 어느 한 영역의 전문가로써 자신만 소유하는 지식으로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사외이사의 출신을 다양화해야 사외이사의 지식, 정보와 경험을 서로 보충하여 회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70%의 사외이사는 ‘이사장, 내부이사와의 교류와 협작을 유지한다’를 선택하였다. 이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은 상대적 독립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5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약하는 원인⁶⁸⁾>

67) 唐清泉, 羅党論, 전계논문, 표12.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약하는 원인				
대답사항	지배주주	회사 관리진	자체독립성	현행 법률제도
대답비율(%)	46	38	46	51

<표 3-6 사외이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원인⁶⁹⁾>

사외이사가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다고 느낀 원인 (다수선택)			
대답사항	의안의 시간이 너무나 짧다	이사회회의에서 의안의 배경자료가 이해하기 어렵다	많은 의견을 발표하기 불편하고 이사회회의 시간을 연장할 염려가 있기 때문
응답비율(%)	38	65	13

<표 3-7 사외이사의 역할을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는 조건⁷⁰⁾>

사외이사역할을 유효하게 발휘하려면 다음에서 어느 조건을 구비하여야 합니까? (다수선택)	설 문	응답비율 (%)
	이사장 및 내부이사와의 교류와 협력 유지	70
사외이사가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음	78	
사외이사에게 제공한 자료가 간단명료하고 정확함	54	
사외이사가 회사영업과 사무실에 대한 실제 고찰 방문	38	
사외이사의 구성이 다양화하여야 하고, 법률, 회계, 금융, 기술, 산업, 시장과 공공관계 등	71	
사외이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48	
이사회 회의 전에 사외이사만 회의할 시간이 있어야 함	33	
사외이사의 초빙, 평가와 보수를 설립한 독립한 기관의 설치	33	

2) 개선방법

68) 唐清泉, 羅堯論, 전개논문.

69) 唐清泉, 羅堯論, 전개논문.

70) 唐清泉, 羅堯論, 전개논문.

(1) 사외이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는 증권거래소나 관련법규를 통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외부전문가의 지원 등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사외이사의 전문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사외이사 및 후보자를 대상으로 직무, 관련법규, 기업윤리 등 사외이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갖춰야 할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⁷¹⁾

4. 사외이사의 추천방법

1) 문제점

중국상재증권회사(湘財證券有限公司)의 2001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장에 의한 결정이 33.3%이며, 사장에 의한 선임이 4.6%, 이사회 기타 구성원에 의한 선임이 18%, 해당 회사 5%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의한 선임이 23.9%이고 추천위원회에 의한 선임이 3.2%, 기타 16.4%이다.⁷²⁾ 그러므로 이사장과 대주주에 의해 추천된 사외이사후보자는 총후보자의 57.2%를 차지하고 있다. 해통증권(海通證券)연구소는 서안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역시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대주주와 이사회에 의해 추천된 사외이사는 83.4% (37.5%+29.2%+16.7%)를 차지하였다.⁷³⁾ 중국사외이사의 추천과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⁷⁴⁾

(1) 대부분 상장회사는 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추천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상장회사는 추천위원회 설치를 위한 내부 결의절차를 밟아야한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내세우며 미루고 있음과 동시에 설치하게 되면 이사회 혹은 대주주의

71) 류동하, 전계보고서, 제23~24면.

72) 金曉斌 · 塗建, 전계보고서, 제227면.

73) 상계보고서, 제227면.

74) 上海증권거래소, 「中國公司治理報告(2004)」, 제4장. 129~130면.

권리에 불리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여 설치를 미루고 있다. 추천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실제 운영경험 부족으로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 대부분 상장회사의 사외이사후보자에 관한 추천이 형식적으로는 지도의견의 규정에 따르고 있지만 실질적인 추천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사외이사후보자는 실질적으로 어떤 개인에 의한 추천이 보편적이다. 이런 개인은 회사대주주대표, 회사이사장, 이사, 감사, 사장일 수 있다. 상장회사에서 대부분 사외이사 후보자는 대주주나 대주주를 대표하는 이사장 혹은 기타 이사에 의한 추천이고, 이사회심사와 주주총회의 표결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사외이사후보자의 추천이 개인에 의해서 된 것이지만 대외적 정보를 공시할 때는 이사회, 감사회 및 기타 단체의 추천으로 전환할 때도 많다.

② 대부분 회사에서 사외이사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하지 않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사외이사는 상장회사, 회사이사, 고급관리임원 혹은 회사주주와 친밀한 사적 관계나 일정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점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 장애 사항이다.

③ 중소투자자에게 사외이사추천권부여가 인색하다. 현재 중국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의 추천권을 대주주가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주주, 특히 유통주식주주에 의해 추천된 사외이사후보자인 경우는 아주 드물다. 중국 상장회사에서 대주주의 주식집중도가 아주 높고 그리고 거의 비유통주식이다. 유통주식주주는 비교적 분산된 편이다.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의 선임권은 주주총회에 있어 대주주의 의도대로 사외이사가 선출될 수밖에 없다.

2) 개선방법

사외이사제도의 성패여부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사외이사의 독립

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의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다.

(1) 사외이사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설치대상 확대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만이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주주들의 후보추천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법규를 통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을 권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⁷⁵⁾

(2) 소수주주에 의한 추천절차의 개선

이사 후보자의 인적사항 및 추천인에 대한 사전공시를 의무화하는 것과 상장회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만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사외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소수주주의 추천을 반영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취지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소수주주가 직접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사전공시제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등 소수주주에 의한 추천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⁷⁶⁾

5. 사외이사의 책임

1) 문제점

75) 류동하, 전계보고서, 제19면.

76) 류동하, 전계보고서, 제20면.

지도의견은 사외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내이사의 책임을 규정한 중국회사법이 적용된 것이다. 사외이사는 그 책임과 의무가 사내이사와 차이가 없다. 사외이사의 경우에도 사내이사와 마찬가지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⁷⁷⁾, 이사회결의에 참여하여 반대의사표시가 없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⁷⁸⁾ 사외이사의 면책요건도 다른 이사와 같이 의사록을 근거로 하고 있다.⁷⁹⁾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와 같이 직접 업무를 집행할 권한은 없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한만이 있고,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충분하고, 보수면에서 볼 때도 보통이사보다 훨씬 적은 보수를 받고 있다는 문제가 존재하지만 중국에서는 종류가 같지 않는 이사를 똑같이 취급하여 처벌한다. 즉 보통이사과 사외이사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⁸⁰⁾ 이것은 권한에 비하여 책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유능한 인재를 사외이사로 확보하기 어렵게 되고 사외이사들의 비정상적인 사임까지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⁸¹⁾

2) 개선방법

(1) 책임의 감경과 면제

77) 중국 회사법 제150조: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은 회사업무의 집행 시에 법률, 행정법규 혹은 회사정관의 규정에 위배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78) 중국 회사법 제113조 제3항: 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사회 결의는 법률이나 행정법규나 회사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에 위배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결의에 참석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표결시에 異議를 표하여 기록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9) 朱筠, 전계논문. 22면.

형식적인 사외이사, 즉 단순히 형식적이며 명예적인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고 무보수인 사외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한 사례가 있다. 2001년 鄭州百文주식회사 증권사기 사건이 그 예인데 사외이사인 陸家豪에게 10만 위안의 처벌을 내렸다. 陸家豪가 재무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고 그리고 보수가 없었지만 陸家豪는 「指導意見」에서 규정한 ‘사외이사’와 유사하기 때문에 책임을 추궁한 것이다. 이와 비교되는 사례로서 2004, 2005년의 德隆, 科龍 회사의 사외이사들은 회사에 문제가 나타난 초기에 사임하여 처벌을 면하였다. 즉 위의 경우는 반대의견의 명시적인 기록이 의사록에 없었기 때문에 처벌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문제발생 전 퇴임이라는 것으로 처벌과 무관하게 된 것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혼란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80) 上海증권거래소, 「中國公司治理報告(2004)」, 제9장“이사의 의무와 책임”, 제10면.

81) 중국 2001년 陸家豪사건에서 사외이사인 陸家豪에게 10만 위안의 벌금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는 견해들이 많다. 특히 사외이사들이 무거운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들이 사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외이사가 그 권한과 보수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이사의 책임에 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회의 결의로 사외이사가 받는 보수수준 등을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하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⁸²⁾⁸³⁾ 다만 이사의 충실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 인한 책임과 고의에 의한 책임, 이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거래로 인한 책임 등은 그 대상에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책임을 면제할 수 없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을 규정해야 한다.⁸⁴⁾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외이사는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이 바쁜데 사외이사의 직책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사외이사의 부담이 크고 자신을 우려하게 되어 오히려 감독역할을 약화시키게 된다. 한편 사외이사가 직면한 직업위험이 지나치게 높으면 사외이사를 담당할 의향이 있는 인사를 구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2) 이사배상책임보험제도

이사배상책임보험이란 이사가 직무수행과정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 주주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사가 부담하는 손실을 회사가 지급하는 형태로 보험료를 담보하는 보험이다.⁸⁵⁾ 사외이사를 위하여 이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지만 사외이사의 고의적 사기 혹은 불성실함으로 인한 상황을 제외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사외이사가 부분책임을 지도록 하지 않으면 도덕적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지도의견 제7조 6항에 의하여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위하여 이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지금 중국에서 이사배상책임보험제도가 출현하여 발전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외이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가입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⁸⁶⁾ 그리고 배상범위로 인한 쟁점 및 보험회사간

82) 상장회사협의회, 「사외이사제도 및 운영개선에 관한 의견」, 2003. 2. 재인용, 류동하, 전계보고서, 제25면.

83)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사외이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방법은 일본에서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사외이사책임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金曉斌, 塗建, 전계보고서, 제253면.

84) 顧功耘, 羅培新, “論我國建立獨立董事制度的几个法律問題”, 「中國法學」, 2001. 6, 제74면.

85) 류동하, 전계보고서, 제25면.

의 경쟁을 피하도록 보험에 가입한 면책사항의 범위, 부담한 수량 등에 대하여 명확한 통일기준을 정하여야 한다.⁸⁷⁾

6. 사외이사와 감사회의 관계

1) 문제점

중국 회사법 제54조와 제55조는 감사회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감사회의 권한은 주로 회사의 재무회계를 감사하며, 경영진의 경영행위를 감독하는 데 있다. 감사회는 회사의 필수 상설기관으로서 이사회를 감독하는 기관이지만 실제 운영에서 감사회는 이사회에 하부기관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감사회 구성원의 선임과 보수를 이사장이나 사장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사외이사와 감사회의 권한에 있어서도 중복된 것이 많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1/3 이상이 이사와 경영진의 위법행위와 회사이익침해행위, 회사내부재무 및 내부자지배 등에 대한 사외이사와 감사회의 감시감독에 중복된다고 응답하였다.⁸⁸⁾

2) 개선방법

감독권의 행사 시점과 내용을 기준으로 감독권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사외이사의 감독은 사전감독, 내부감독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감독기능에 초점을 맞춰 감독권의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감사회의 감독권은 사후감독, 외부감독 및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결정과정에 대한 사후감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감사회는 상설기관이므로 상시감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감사회제도와 사외이사제도는 상호 보완적으로 감독기능을 공

86) 중국平安保險회사는 丘博보험회사와 연합해서 중국에서 처음 사외이사책임보험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중국상장회사 수에 비하면 아직은 가입 회사가 적은 편이다.

<http://stock.qd.sd.cn/insure/insure/bxgd/2002-10-25/162120.stm>

87) 上海증권거래소, 「中國公司治理報告(2004)」, 제9장, 19면.

88) 上海증권거래소, 「中國公司治理報告(2004)」, 135면.

유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또한 사외이사는 이사회 의 중대결정의 공정성이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중심으로 하고, 감사회는 회사법에서 정한 ‘회사재무검사’, 이사회에서 규범한 운영, 정보공시원칙에 대한 준수 및 이사와 경영진의 경영행위의 합법성을 감독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⁸⁹⁾

7. 사외이사제도의 법적 체계문제

사외이사제도의 역할이 제대로 실시되려면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법적 체계의 완비가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사외이사제도와 관련된 법률체계가 완성되지 못하였고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2005년 회사법 제123조에 의하여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 의하여 제정한다고 정하였다. 사외이사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있지만 사외이사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국무원의 규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법체계에 혼란만 조장된다. 왜냐하면 업종별 행정관리단체에서 지침서의 일종인 가이드라인과 같은 규정을 시행하면서 거미줄같이 얽히는 현상을 자아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업종별 회사에 적합한 사외이사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해 업계의 회사의 의견(이때의 회사의 의견은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내부자의견을 말한다)이 소수주주의 의견보다는 우선될 것이라는 우려를 아니 할 수 없고, 이는 회사에 유리하지 않은 내용은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회사와 소수주주의 대립적 관계에서 객관적 조정과 진정한 기업지배구조개선이라는 대명제 하에서 국무원이 하루빨리 구체적인 사외이사제도의 틀을 제시하여 통일된 법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두 번째 중국내에 사외이사제도와 관련된 유일한 규범적 규정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지도의견”이다. 그러나 지도의견은 2가지의 문제가 존재한다. 하나는 법적 지위가 낮고, 또 하나는 증권시장의 발전에 따라 사외이사독립성 등의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89) 上海증권거래소, 「中國公司治理報告(2004)」, 135면.

세 번째 “상장회사정관가이드라인”은 사외이사가 권한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내용 및 권한범위, 방식 및 방법, 업무제도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외이사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제4장 韓國의 社外理事制度

제1절 導入背景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후에 한국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사회 모든 부분에서의 저효율적인 지배구조를 바꿔야 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한국사회의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었다. 특히 국가경제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 경우 가장 전면적인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의 대기업은 대주주 개인에 의하여 소유와 경영이 독점되어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거의 동일한 개념이었다. 그리고 소유와 경영의 일치라는 독점적 지배구조는 경영의 불투명, 저효율, 기업의 비윤리적인 운영 등으로 나타나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IMF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으로 위와 같은 비효율적인 회사지배구조란 인식이 일반화되었다. 이에 기업들은 자발적인 이든 또는 정부 및 외국기관의 다양한 요구와 압력에 의한 것이든 간에 지배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가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다.

이러한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제2절 導入過程

1990년대부터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한 논의가 있긴 있었으나⁹⁰⁾ 본격적으로 의논된 것은 IMF차관을 위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90) 김화진, “회사지배구조 논의의 현주소와 과제”, 「CG REVIEW」 2004. 9, 1~5면 참조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과의 약속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이 한국의 내생적, 자생적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 강압적인 형태로 한국에서 등장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정부는 IMF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기업개혁의 핵심을 경영투명성 확보에 두고 회사지배구조 관련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추진하였다⁹¹⁾.

금융위기 후 IMF와 한국정부는 경제위기의 주요원인이 한국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있다고 보았다. 기업의 폐쇄적인 의사결정구조, 외부차입에 의한 무리한 투자, 국제적인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높은 부채비율, 불투명한 회계제도 등이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도의 폭락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IMF는 1997년 12월 3일 정부와 체결한 1차 합의서에 기업집단의 결합채무제표 작성과 상호지급보증의 완전해소를 요구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후속조치들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어 1998년 2월 IMF와 정부는 제3차 합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주주에 대한 책임 강화, M&A 시장개방, 파산절차의 개선 등이다. 또한 98년 5월의 4차 합의에서는 지배구조개혁과 관련된 이행조치들을 점검하고 은행 간의 채권단협의회 구성, 기업의 반기 및 분기별 재무제표 공시방안 등을 추가하였다⁹²⁾.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IMF의 요구는 한국정부의 대기업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IMF와의 합의 이후 한국정부는 기업구조개혁 5대 과제를 발표하고 M&A시장의 자유화, 은행대출시장을 통한 기업 감독기능 강화, 사외이사체도의 도입, 지배대주주의 책임강화, 소액주주권 강화, 대규모 기업집단의 상호지급보증 해소 및 폐지, 그룹 기획조정실 폐지 등 지배구조 개선정책을 잇달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대기업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신정부 출범을 전후로 하여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인수위 등에 의해 입안되었고, 이후에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재경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제3차 의향서에서 IMF와 합의한 지배구조 관련 제도들의 대부분은 98년 2월 증권거래법, 외국인투자법, 공정거래법, 주식회사외자법 등의 개정으로 대부분 즉시 반영되었고, 일부 사안들에 대한 법 개정 작업

91) 김연, “중국과 한국의 상장회사 지배구조모범규준의 비교연구”, 박사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2005. 77면.

92) 김연, 전제논문, 78면.

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제3절 主要內容

한국에서 사외이사가 최초로 제도화된 것은 1998년 한국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상장규정을 개정하여 이사총수의 1/4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한 것이었다. 그 후 상법, 증권거래법,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외이사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을 담당하지 않고 회사와 밀접한 관련 또는 이해관계가 없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이사이다.⁹³⁾

사외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상법상 이사에겐 인정된 권한을 가지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이런 점에서 사내이사와 법적 지위 면에서 차이가 없으나 사외이사의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사외이사는 이사회 의사결정의 활성화 및 이사회 활성화와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는 기능에 중점이 있고 통상의 업무 집행에 속하는 사항은 그 직무 외의 것이다.

학자들이 위와 같이 사외이사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데 한국 사외이사에 관한 법적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상법상 사외이사

상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의무가 없다. 즉 상법에는 사외이사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다. 그런데 1999년 개정 상법에서는 정관으로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2/3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상법상 사외이

93) 강희갑, 「회사지배구조론」, 523면. 또 사외이사를 말하자면 이사회가 개최되는 때에만 참석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이사로서, 상시 회사에 출근하여 내부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내이사 즉 상근이사에 대립되는 이사를 의미하다. 재인용, 양동석, 「사외이사제도의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업법연구」, 제8집, 254면.

사의 선임이 의무화되는 경우는 회사가 정관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

증권거래법은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동법 제54조의 4 또는 제191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자’를 사외이사로 정의하고(증권거래법 제2조 제19항),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이사총수의 1/4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는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또는 증권회사의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1/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외이사를 과반수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또는 증권회사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1/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3. 은행법상의 사외이사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은 이사회에서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수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사외이사는 다음의 비율에 따라 주주대표 및 이사회가 각각 후보를 추천한다. 주주대표가 추천하는 사외이사후보의 수는 전체 사외이사의 70%이며,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외이사후보의 수는 전체 사외이사의 30%이다. (은행법 제22조 제2항, 제3항). 주주대표가 추천하는 사외이사후보는 주주대표 본인 또는 주주대표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 주주대표는 동일인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가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불량자 3)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 4) 3)의 계열기업군을 지배하는 자 5) 계열주와 은행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

수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은행법 제22조 제5항 제6항). 그리고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의 임원 및 임원에 준하는 자 2) 계열주 3) 계열주와 은행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를 들 수 있다(은행법 제22조 제7항).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은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2/3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5장 結 論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지배구조개혁의 여러 가지 결론 중의 하나가 사외이사제도이다. 중국 또한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이래로 많은 외국기업의 유치와 더불어 기업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개선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중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분야 중에서 본 연구는 2005년 신회사법에서 도입한 중국의 사외이사제도를 조사·분석하고 현재 중국의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의 사외이사제도를 조사·분석하여 중국 사외이사제도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며 중국에서 앞으로 나타날 문제점을 미리 진단하여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중국의 사외이사제도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한국사외이사제도는 금융위기를 겪었을 때 1998년에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사외이사제도를 강제적으로 도입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의 사외이사제도는 2001년에 「지도의견」의 발표로 정식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2005년 회사법을 개정하면서 사외이사제도를 법제화 하였다.

양국이 사외이사를 도입하여 시작한 시기는 불과 3년의 차이였으며, 그 결과 중국과 한국의 사외이사제도는 유사한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사외이사 인원수의 부족, 정보접근권의 부족, 선임절차문제, 독립성 결여 및 제도적 장애 등의 문제들이 나타났다. 한국의 사외이사제를 본보기로 삼아 분석해 본 결과 중국의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법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1. 공직자의 선임

중국에서는 공직자 등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데 있어서 규정이 불명확하고, 실제로 인민대표대회 및 정치협상회의 등에서 정년퇴임한 공직자가 사외이사로 취임하고 있다. 이것은 해당 회사가 공직자들의 광범위한 인

맥을 이용하기 위하여 초빙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직공직자의 취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퇴직일 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 출신자가 사외이사로 되는 경우에 자칫 정부에 로비창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직 정부고위관리나 정부의 기업, 금융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이 관련 기업의 사외이사로 되는 경우에는 그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3년 후로 연장하여야 한다는 주장⁹⁴⁾도 있다.

그러므로 중국도 한국처럼 공직자 등 일정 범위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3년 후로 한정하여 사외이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다.

2. 사외이사의 책임에 대한 명확성

사외이사의 책임에 대한 불명확성과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중국과 한국의 공통문제이며 중국과 한국의 학자들이 이에 대해 많은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한국학자의 주장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000년 법무부에 제출된 “기업지배구조개선 용역보고서”에서는 이사의 과실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는 정관에 의하여 사외이사의 책임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연간보수총액의 적절한 배수(5배)의 금액으로 한정 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제출하였다.⁹⁵⁾

94) 정래영,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기업법연구」 제19권 제2호, (통권21호), 76~77면.

95) Coudert Brothers · 법무법인 세종 · 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Institute · Bernard S. Black 교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최종보고서 및 법개정 권고안”(1999. 6), 43면. 이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이사의 책임을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곤란하다거나 또는 사외이사와 사내이사는 그 권한에 차이가 없는 이상 사외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사내이사와의 형평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반론이 있다(이기수, 전계논문, 88-91면 참조). 재인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사외이사 선임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02. 5. 제62면.

따라서 중국의 경우에도 사외이사의 과실로 인한 책임에 대해 한국과 같이 연간 보수총액의 5배의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을 참고하여 중국 시정에 맞는 배상책임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사외이사에 관한 법적 규정

중국은 2005년에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법적 규정을 하였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지금 중국에서는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 행정규정에 불과하고 법적 지위도 너무 낮다. 게다가 상업은행, 증권업종 및 보험업종의 사외이사제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하고 있다.

한국은 1998년에 증권거래법을 개정하고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여 사외이사제도의 법적 지위를 만들었다. 사외이사제도는 상법상의 개념이 아니지만 1999년 개정상법에서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가 2/3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다.

중국도 한국의 사외이사에 관한 법적 규정을 중심으로 보다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키고, 법적 책임을 현재 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외이사제도는 영미에서 시작하여 빠른 속도로 전세계적 범위로 발전하고 있다. 당초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경영진을 감독하여 회사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사회기능을 회복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 중국은 그 취지를 실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아직도 제도의 미성숙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영미의 사외이사의 역사는 40년 이상이 되었는데 그간 많은 어려움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허나 중국은 채 10년도 되지 않았다. 어떠한 제도도 그 취지와 효과를 보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을 요하고 있다. 문제는 사외이사제도를 선형한 국가의 시행착오를 교훈삼아 당해 국가의 기업환경과 국민정서를 어떻게 조화시켜 자기 체질화하는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개혁의 한 방법으로서의 사외이사제도의 실시에 대하여 최종적인 평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 그렇다고 현재의 사외이사제도의 내용을 그대로 존치할 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사외이사제도의 내용을 선형한 국가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부단히 제도 개선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의 법체계에도 문제가 있다.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법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게 중국의 현실이다. 회사법상의 규정이 너무 원론적이고 단순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면이 많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너무 많은 하위법령의 제정으로 법적용에 혼란만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어떠한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이 법원성이 있는지 그 중 어느 것이 상위의 것인지 판단하기가 수월치 않다. 이는 기업활동의 글로벌화에 있어서 중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기업에 적용되는 회사법에 정치적 색채가 가미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예컨대 중국회사법 제19조의 경우가 그렇다. 즉 회사내에 중국공산당조직을 설립하고 이의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토록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글로벌 시대에 전혀 맞지 않고 외국기업의 중국진입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 입법론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많은 학자들은 기업지배구조의 목표가 단순한 경영자 감시가 아니라 최종적인 경영의사결정의 품질향상에 있음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서 경영권과 지배권을 누가 갖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의사결정이 되는가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좋은 의사결정을 생산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갖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처음부터 이상적인 모형을 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다. 기업의 성장단계, 경제의 발전단계에 따라 지배구조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정책이나 제도의 연관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는 당분간 경영권에 대한 감시, 감독이 주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자는 사외이사라고 생각하므로 사외이사제도의 효율적인 모형을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모형이든 시간에 선진기업 지배구조의 분명하고 공통적인 시사점은 ‘견제와 균형’, 그리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 원칙’임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I. 국내문헌

1. 저서

- 법무부, 「각국의 회사지배구조」, 1998.
- 나승성, 「각국의 회사지배구조」, 법무부, 1999.
- 이범찬, 「사외이사의 제도, 회사법의 제문제」, 삼지원, 1998. 9.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사외이사 직무수행 표준모델과 운영실제」, 2006. 9.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7년 주권·코스닥 상장법인 사외이사 선임현황 분석」, 2007. 9.
- 안성포·이준우, 「법인 이사회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4.
- 류동하,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5. 11.
- 강희갑, 「주식회사의 경영감독,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에 대한 연구」, 2002. 5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4년 상장회사 경영인 현황 분석」, 2004. 7.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사외이사 선임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02. 5.

2. 논문

- 김진수, “중국상장회사지배구조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청구논문, 2005.
- 김연, “중국과 한국의 상장회사 지배구조모범규준의 비교연구”, 박사논문, 명지대학교대학원, 2005.
- 우성목,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법적 연구”, 석사청구논문, 성균관대학교, 2002.
- 방두원, “사외이사의 책임론에 관한 연구” 박사청구논문, 동국대 대학원, 2004.
- 송종호,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연구”, 석사청구논문, 건국대대학원, 2004.
- 양원태, “중국국유기업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제13권 제3호, 2000.

- 구기보, “국유기업의 소유제 개혁과 주식제 발전”, 「중국학연구」, 제40집
- 정용상, “중국회사법의 최근변화”, 「외법논집」 제15집, 2003. 12.
- 홍복기,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제7호, 1988.
- 홍복기, “사외이사제도의 정착과 그 활성화”, 상장협, 1998.
- 김홍수, “사외이사제도 소론”, 「기업구조의 개편과 상사법」, 박길수교수화합논문
집, 도서출판정문, 1998.
- 김용구,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10집 2002.
- 김화진, “회사지배구조 논의의 현주소와 과제”, [CG REVIEW], 2004. 9.
- 이성봉, “독일기업지배구조에서 은행의 역할과 한국경제 구조조정에 대한 시사
점”, 「UE학연구」, 제3권 제1호, 2면.
- 양동식, “사외이사제도의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 「기업법연구」 제8집, 2001.
- 정쾌양,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기업법연구」 제19권 제2호, (통권
21호), 2005.
- 박강익 · 박수영, “사외이사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21호,
제1호(통권28호), 2006.
- 전삼현, “독일 감사회제도의 문제점”, 「상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2003.
-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2004년 제3차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설문조
사결과 보고서”, 「기업지배구조리뷰」 통권 18호, 2005, 1 · 2.
- 고재중, “중국의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 권중호, “한국형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모색”,
상장협 제44호, 2001. 9.

II. 국외문헌

1. 저서

上海證券交易所研究中心, 「中國上市公司治理報告」, 2003.

李偉建, 「獨立董事制度研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4.

上海證券交易所, 「獨立董事制度研究: 以權利, 義務和責任爲中心」, 2004..

上海證券交易所, 「中國公司治理報告」, 2004.

趙旭東, 「公司法學」, 高等教育出版社, 2006.

2. 논문

劉大洪·李華振, “經濟法視野里國企治理模式; ‘兩權分离失灵’的探源与反思,

<http://www.xslx.com/htm/mz fz/fxtt/2004-12-09-17892.htm>

陳林, “從‘放權讓利’到‘兩權分离’”,

<http://china-week.com/html/00616.htm>

甘功仁, “關於引入獨立董事의 思考”,

林凌·常城, “獨立董事制度研究”, 「証券市場導報」, 2000. 9.

唐清泉·羅党論, “設立獨立董事的效果分析——來自中國上市公司獨立董事的問卷調查”, 「中國工業經濟」, 2006.

顧功耘·羅培新, “論我國建立獨立董事制度的几个法律問題”, 「中國法學」, 2001.

朱筠, 「建立獨立董事制度的回顧与前瞻」, 西南政法大學, 碩士畢業論文, 2006.

邱永紅, “我國獨立董事制度的現存問題与法律對策”, 「月旦民商法雜誌」, 總第15期, 2007.

楊敏華, “中國公司治理——獨立董事之研究”, 「全國律師」, 2004年 7月.

3. 인용법규

「상장회사정관가이드라인」(上市公司章程指引), 1997.

「상장회사정관가이드라인(2006년 개정)」(上市公司章程指引(2006年修訂)).

「경외에서 상장한 회사의 규범적 운영과 개혁을 심층 추진에 관한 의견」(關於

進一步促進境外上市公司規範運作和深化改革的意見) 1999. 3.
「증권회사내부지배가이드라인」(證券公司內控指引) 2001. 1.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제도를 설치에 대한 지도의견」(關於在上市公司建立獨立
董事制度的指導意見), 2001. 8.
상장회사지배구조모범」(上市公司治理準則), 2002. 1.
「주식제상업은행 사외이사와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股份制商業銀
行獨立董事和外部監事制度指引), 2006.
「주식제상업은행회사지배구조가이드라인」(股份制商業銀行公司治理指引), 2006.
「공개 발행 증권회사의 중대 관련거래 등에 관한 심해요구」(關於公開發行證券
的公司重大關聯交易等事項的審核要求),
「보험회사 사외이사의 관리에 관한 잠행 방법」(保險公司獨立董事管理暫行方
法), 2007.
中國公司法, 1993年.
中國公司法, 2005年.

4. 기타자료

金融界財經网(www.jrj.com)
www.google.co.kr
北大法律信息网(www.chinalawinfo.com)
中國知网(www.cnki.net)